



세법연구 21-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비교연구 -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세법연구 21-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비교연구 -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21-04

www.kipf.re.kr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비교연구 -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

2021. 9

| 정다운 · 홍성희 · 강문정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비교연구 -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

2021. 9

| 정다운 · 홍성희 · 강문정 |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다 운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강 문 정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일반사항	11
1.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	11
2. 구분납부제도(Split Payment Mechanism)	14
III.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21
1. 일반적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21
2.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22
가. 금지금 및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	23
나.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28
I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33
1. 영국	33
가. 일반적 징수제도	33
나. 매입자납부제도	35
2. 독일	40
가. 일반적 징수제도	40
나. 매입자납부제도	42

3. 프랑스	46
가. 일반적 징수제도	46
나. 매입자납부제도	48
4. 이탈리아	51
가. 일반적 징수제도	51
나. 매입자납부제도	53
다. 구분납부제도	56
5. 폴란드	60
가. 일반적 징수제도	60
나. 구분납부제도	62
6. 호주	74
가. 일반적 징수제도	74
나. 매입자납부제도	76
다. 구분납부제도	80
 V. 국제비교 및 소결	87
1. 국제비교	87
가.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개요	87
나. 매입자납부제도	89
다. 구분납부제도	93
2. 소결	101
 참고문헌	107

표 목차

〈표 I-1〉 매입자납부제도 및 분할납부제도 비교	20
〈표 III-1〉 우리나라의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24
〈표 III-2〉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적용대상 업종	29
〈표 IV-1〉 영국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36
〈표 V-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개요	89
〈표 V-2〉 주요국의 매입자납부제도	91
〈표 V-3〉 주요국의 구분납부제도-개요	94
〈표 V-4〉 주요국의 구분납부제도-납부 및 정산	98
〈표 V-5〉 주요국의 구분납부제도-기타	100

그림 목차

[그림 Ⅲ-1]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결제흐름	26
[그림 Ⅲ-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30

I. 서론

- 우리나라 및 EU에서 도입한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바탕으로 공급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¹⁾
 -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납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함
 - 거래징수란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의미함²⁾
 - 이를 통해 최종소비자 이전 거래단계마다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매입자는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귀착됨
 - 최종소비자는 매입세액공제권이 없는 점에 기인함
-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사기와 조세회피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부가가치세제의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구조는 조세사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만의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³⁾
 - 관련된 대표적 부가가치세 사기행태로 회전목마사건(carousel) 또는 행방불명 사업자 사건(missing trader)을 이야기할 수 있음
 - 회전목마사건(또는 행방불명 사업자 사건)이란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파산하고 행방불명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횡령하는 사건을 말함⁴⁾

1) 성명재·박명호·이성식·박종수, 2012, p. 83.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3) Michael Keen and Stephen Smith, 2007, p. 1.

- EU에서 문제되는 회전목마사건은 특히 회원국 간 거래에 대한 영세율제도 및 부가가치세 징수시기와 납부시기의 차이에 기인한 사건으로 분석됨⁵⁾
 - 그 외 악의성은 없으나 거래징수시기와 납부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미이행이 발생하기도 함
 -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과 사업자금의 혼용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시기에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납부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사기는 국가 세수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상적 사업자의 경쟁력 및 사업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국가 세수 누락을 야기함
 - 부가가치세 사기업자는 정상적 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며 중간단계에 사기업자가 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⁶⁾
 - 부가가치세 사기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여 정상적 사업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각국은 부가가치세 사기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도 포함됨
- OECD는 회원국이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의 변화, 납세자의 보고의무 강화, 자료 분석, 국제적 행정공조 및 정보교환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⁷⁾
 - 부가가치세 사기 및 납부의무 이행에 대한 징수제도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매입자 납부제도와 분할납부제도가 있음

4) 김재진, 2010, p. 84.

5) Michael Keen and Stephen Smith, 2007, p. 12.

6) Michael Keen and Stephen Smith, 2007, pp. 14~15.

7) OECD, 2020, pp. 56~57.

- 우리나라 또한 2008년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많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의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고금, 스크랩, 유흥업소 등으로 징수특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가가치세 사기 및 누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의 확대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2020년에 발생한 전체 국세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는 약 46%(약 9천억원)의 비중을 차지함⁸⁾
 -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현금정리율은 40% 이상으로 타세목에 비해 높은 편⁹⁾이지만, 여전히 상당액이 체납되고 있음
 - 반면 징수특례제도는 기존의 징수체계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에 해당하므로 납세협력 비용 및 혼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이 부가가치세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국이 국내 사업자의 국내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살펴보고 각국의 제도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국외 사업자의 국내 공급거래에 대한 징수특례제도(예: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제도)는 검토하지 않음

8) 국세청, 『국세통계』, 2-3-1. 체납액 정리 실적I(지역세목)

9) 2017~2020년 체납발생총액(당해 연도 발생액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산액) 중 현금정리 비율의 평균치는 부가가치세가 46%로 가장 높으며 그 외 법인세 및 소득세는 각각 32%, 29%임(국세청, 『국세통계』, 2-3-1. 체납액 정리 실적I(지역세목). 2017~2020년 자료)

- 조사대상국으로는 국내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를 선정함
 - 영국, 프랑스, 독일은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임
 -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는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하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로 구분하여 일반적 사항에 대해 살펴봄
 -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의 개념, 장·단점 등에 대하여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검토함
 -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제도에 대해 살펴봄
-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국제비교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함

II.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일반사항

1.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¹⁰⁾

- 매입자납부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매입자납부제도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제도하에서 납부하는 자를 공급자에서 매입자로 변경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외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서 변동이 없음
 - 매입자납부제도하에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으며, 매입자의 경우 완전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화 및 용역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매입으로 인해 대신 납부하는 공급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으로 인한 공제대상인 매입자의 매입세액’의 상계를 통해 해당 거래로 인한 매입자의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 이와 같은 매입자납부제도는 협의의 매입자납부제도와 광의의 매입자납부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광의의 매입자납부제도 중 ‘국내 사업자의 거래’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함¹¹⁾
 - 협의의 매입자납부제도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말함

10) OECD, 2020, p. 57.

11) 김재진, 2010, p. 83.

- 광의의 매입자납부제도란 협의의 매입자납부제도에 더하여 국내 재화 및 용역거래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함
 - 국내 사업자 간(B2B) 거래 및 국내 사업자와 소비자 간(B2C)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을 말함
 - 서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징수특례 규정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하에서의 매입자납부제도는 모두 ‘국내 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 Mechanism)’를 말함
- 매입자납부제도는 행방불명 사업자를 방지하여 부가가치세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¹²⁾
- 매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이론상 행방불명 사업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즉 매입자의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B2B 거래의 경우 매입자의 신고납부 누락이 발생하여도 국가 차원에서의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OECD 37개 회원국¹³⁾ 중 상당수의 회원국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OECD에 의하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일본, 폴란드 및 스위스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 OECD는 우리나라의 금지금 및 스크랩 등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아닌 구분납부제도로 분류함
 - 폴란드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매입자납부제도를 폐지하고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12) EC, 2008, p. 7.

13) 38개의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숫자임

-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전면적 매입자납부제도(Generalized reverse charge regime)를 도입한 회원국은 없으며 주로 조직된 사기에 취약한 특정 분야에 한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OECD 회원국은 휴대폰, 가스 및 전기, 통신서비스, 탄소배출권, 건설업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EU는 2018년 12월에 회원국의 전면적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을 허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¹⁴⁾
 - 일부 EU 회원국은 EU 회원국 간 사기거래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목표인 ‘도착지 과세제도(Definitive VAT Regime)¹⁵⁾’ 도입 이전에 국내 거래에 대해서라도 전면적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승인을 요청함
 - 체코는 EC로부터 전면적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음¹⁶⁾
- 이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상호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매입자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소매세로 전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¹⁷⁾
 -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해 조세납부를 최종소비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른 형태의 탈루(예: 회색경제¹⁸⁾에 재화의 공급)가 발생할 수 있음¹⁹⁾

14) European Committee, “COUNCIL DIRECTIVE(EU) 2018/205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L2057>, 검색일자: 2021. 7. 20.

15) 현재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EU 역내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출국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나, 도착지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EU 역내거래 시 공급자가 도착지의 세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의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국의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매입세액’으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됨. 한편 공급자가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은 국가 간 정산방식을 통해 매입자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지급됨(KPMG, “The road towards a definitive European VAT system,” 2018, p. 3)

16) Deloitte, “Update on implementation of VAT changes,” <https://www.taxathand.com/article/12780/Czech-Republic/2020/Update-on-implementation-of-VAT-changes>, 검색일자: 2021. 7. 28.

17) Michael Keen and Stephen Smith, 2007, p. 24.

- 매입자납부제도는 상호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단 한 번의 사기만으로도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²⁰⁾
- 참고로 EU는 매입자납부제도를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임²¹⁾
 - EU의 매입자납부제도는 역내거래의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종 목표인 도착지 과세제도 이전의 과도기적 제도로 2022년 6월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²²⁾²³⁾
 - 전면적·부분적 매입자납부제도 모두 폐지될 예정임
 - EU는 2022년 7월에 도착지 과세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음²⁴⁾

2. 구분납부제도(Split Payment Mechanism)²⁵⁾

- 구분납부제도는 매입자가 공급자가 청구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가 아닌 과세관청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납부하거나 특정 계좌에 예치하는 것을 말함
-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 모두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18) 회색경제(Grey Economy)는 거래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법적 규제가 되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이 포함됨. 공식적인 기록상에는 회색경제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의 미신고 및 미납부 행위가 발생하여 세수누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Accounting Tools, "Gray economy definition," <https://www.accountingtools.com/articles/2017/9/25/gray-economy#:~:text=What%20is%20the%20Gray%20Economy%3F%20The%20gray%20economy,a%20disparity%20in%20price%20points%20across%20geographic%20regions.,> 검색일자: 2021. 9. 13.)

19) Jan Sarnowski and Paweł Selera, 2019, p. 122.

20) 기은선·구자은·박명호, 2015, p. 154.

21) OECD, 2020, p. 57.

22) COUNCIL DIRECTIVE (EU) 2018/2057 of 20 December 2018.

23) COUNCIL DIRECTIVE (EU) 2018/1695 of 6 November 2018.

24) Bloomberg Tax, "INSIGHT: VAT Aspects of the EU's Package for Fair and Simple Taxation,"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E1MEHGC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 검색일자: 2021. 7. 28.

25) OECD, 2020, p. 58.

- 다만 매입자납부제도와 달리 구분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 공급자 이외의 자(과세관청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 또는 예치하고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매입자납부제도하에서는 일반적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완전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화·용역을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음
- 구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활용한 방식과 원천징수방식으로 구분됨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 매입자가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전용계좌(VAT Account)에 수탁하면 은행이 이 중 공급가액²⁶⁾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관청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함²⁷⁾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는 부가가치세 수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별도계좌임
 - 매입자가 직접 공급대가 중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형되기도 함
 - (원천징수방식) 지급대행기관 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지급하고 공급자는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말함
- 구분납부제도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²⁸⁾²⁹⁾
 -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비교적 구분납부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음
 - 에콰도르는 소규모 사업자의 ‘국내 행방불명 사업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지정한 납세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업자 등을 징수의무자로 하는 원천징수방식의 구분납부제도를 1997년에 도입하였음³⁰⁾³¹⁾

26)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말함

27) PWC, 2010, p. 144.

28) 정지선·윤성만, 2016, p. 170.

29) Richard T. Ainsworth, 2011, p. 4.

30) Richard T. Ainsworth, 2011, p. 3.

31) 에콰도르 국세청장은 2010년 부가가치세 포탈은 21% 수준으로 45%로 추정되는 소득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봄. 이에 비추어 보면 구분납부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 외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도 원천징수방식의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³²⁾³³⁾³⁴⁾
- EU 회원국 중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에서 구분납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체코 등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의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구분납부제도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반하여, 체코는 매입자가 공급자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피하고 싶은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과거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불가리아는 2003년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7년 폐지함³⁵⁾³⁶⁾
 - 불가리아는 부가가치세액이 BGN 1천 이상인 B2B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의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였으나 구분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를 활용하여 구분납부제도 적용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누리는 신종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었음³⁷⁾
 - 루마니아는 2018년부터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의 구분납부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나 2020년 폐지함³⁸⁾³⁹⁾

동일 기준 적용 시의 EU 평균치인 12%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Richard T. Ainsworth, 2011, p. 3)

32) IBFD - Mexico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13.9.5. Withholding obligation(Last Reviewed: 19 February 2021.)

33) Bloomberg Tax, "Value-Added Tax Navigator - The Americas, Chile, 9. Extension or Shifting of VAT Liability,"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RB618#section\(1\)](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RB618#section(1)), 검색일자: 2021. 7. 21.

34) Bloomberg Tax, "Value-Added Tax Navigator - The Americas, Colombia, 9. Extension or Shifting of VAT Liability,"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 R8BH8#section\(1\)](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 R8BH8#section(1)), 검색일자: 2021. 7. 21.

35) Richard Thompson Ainsworth and Boryana Madzharova, 2012, p. 11.

36) Ekaterina Tarhova, 2021, p. 110.

37) Pashew, Konstantin, 2006, pp. 7~10.

38) Deloitte, "VAT split payment mechanism abolished," <https://www.taxathand.com/article/>

- 루마니아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파산절차 중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였음
 - EC는 해당 제도가 정직한 회사에 지나친 행정 부담을 끼치며 EU VAT 지침 및 용역제공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권고함
- 구분납부제도는 매입자납부제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사기방지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 구분납부제도와 매입자납부제도 모두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거하여 부가가치세 사기를 예방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구분납부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제도가 복잡해지며 사업자의 자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단점도 지적됨⁴⁰⁾
- 납세협력비용이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며,⁴¹⁾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다수의 부가가치세 계좌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상의 부담이 있고⁴²⁾ 금융기관에도 추가적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됨
 -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수납하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자, 특히 구조상 매출세액에 비하여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됨⁴³⁾
 - 사업마진이 많지 않은 기업(firms with thin profit margins)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⁴⁴⁾

12777/Romania/2020/VAT-split-payment-mechanism-abolished-, 검색일자: 2021. 7. 30.
 39) European Committee, "November infringements package: key decision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18_6247, 검색일자: 2021. 7. 30.
 40) Hana Zidková, Aneta Šťastná, 2019, pp. 888~890.
 41) Richard Thompson Ainsworth and Boryana Madzharova, 2012, p. 11.
 42) Ekaterina Tarhova, 2021, p. 114.
 43) Deloitte, 2017, p. viii.
 44) Richard Thompson Ainsworth and Boryana Madzharova, 2012, p. 11.

- 구분납부제도가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를 구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제 밖의 사업자를 이용한 신규 조세사기의 발생가능성에 비추어 구분납부제도가 부가가치세 사기를 줄일 수는 있으나 근절시키지 못하며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⁴⁵⁾
 - 불가리아에서는 사기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 사용자에게 부여된 조기환급과 환급 시 세무감사(tax audit)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부가가치세 면세자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신종사기유형이 나타남
 - 부가가치세 사기범이 사기 행각 후 부가가치세 전용계좌 사용자에게 부여된 신속하고 용이한 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구분납부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 과세체계 내에서 과세관청의 검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⁴⁶⁾
 - Hana Zidková와 Aneta Šťastná(2019)는 변화로 인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불확실성과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재의 과세체계 내에서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주장함
- 다만 구분납부제도에 대한 유의한 실증분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음⁴⁷⁾
 - 이탈리아는 구분납부제도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갭(VAT GAP)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음
 - Ekaterina Tarhova(2021)는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B2G)만을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좀 더 일반화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폴란드의 사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함

45) Richard Thompson Ainsworth and Boryana Madzharova, 2012, pp. 11~14.

46) Hana Zidková, Aneta Šťastná, 2019, p. 893.

47) Ekaterina Tarhova, 2021, pp. 121~122.

- 구분납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수단 및 IT 기술과의 공조가 필수적임
 - 이탈리아는 구분납부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사기에 취약한 유류·운송분야에 대한 법적제재, 매입자가 공급자의 정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예: white list)⁴⁸⁾의 도입, 보고체계의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음
- 참고로 Deloitte는 EU로부터 수탁을 받아 구분납부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장점이 관련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전면적 적용보다는 제한된 특정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함⁴⁹⁾
 - Deloitte는 2017년 EU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구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갭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저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음
 - 부가가치세제도의 복잡성 및 행정비용의 증대, 납세자에 대한 현격한 재무흐름상의 충격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Deloitte는 구분납부제도가 특정 유형의 사기를 줄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므로 특정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제안함
 - 다만 Deloitte는 계량평가를 위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였으므로 연구설계방법에 따라 편익분석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⁵⁰⁾
- 그 외 Deloitte는 구분납부제도의 운영을 위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현금기준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함⁵¹⁾
 - Deloitte는 특히 매입자에게 납부의무가 이전되는 구분납부제도하에서는 현금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주장함

48) White list에 대해서는 IV-5에서 설명함

49) Deloitte, 2017, p. I.; p. ix.

50) Madeleine Merks and Naomie Verbaan, 2019, p. 302.

51) Deloitte, 2017, pp. 52~53.

- 현금기준은 공급자 측면에는 영향이 없고, 매입자 측면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회계 및 「소득세법」 등과의 조정에 수반되는 현저한 행정비용을 감안하면 매입자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매입자에게 현금흐름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EU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주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 1-1〉 매입자납부제도 및 분할납부제도 비교

구분	매입자납부제도	구분납부제도
개요	• 매입자가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과세관청에 납부 • 완전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의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상계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매입자가 신고·납부기한 전에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과세관청에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거나 특정 계좌에 예치함 • 매입자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신고·납부기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과 원천징수방식으로 구분됨
VAT 절차 및 방법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제도에서 납부의무를 제외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일함	• 전용계좌: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공급대가를 수탁하면 은행이 공급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에 입금함 • 원천징수: 지급대행기관 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함
장점	• 매입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이윤상 행방불명 사업자의 차단이 가능함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 또는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기 예방 가능함 •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 수납의 이점이 있음
단점	• 부가가치세 상호검증 기능을 약화시킴 • 단 한 번의 사기로도 거래 전체의 부가가치세액 회수가 불가능함 •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 비용 증가	• 부가가치세제도가 복잡해짐 • 다수의 부가가치세 계좌 및 거래내역 관리 등의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발생함 • 사업자의 자금흐름에 부정적 영향 있음

자료: 본문 제Ⅱ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1. 일반적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 우리나라는 1977년에 유럽형 부가가치세 모형을 따라 전단계세액공제방식과 거래징수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기본 틀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음⁵²⁾
 -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납세자로 함⁵³⁾⁵⁴⁾
 - 납세자인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반해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됨⁵⁵⁾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함
 - 일반적으로 매입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52) 정지선·윤성만, 2016, p. 164.

5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항

54) 국세청, 2021, p. 6.

5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마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매분기마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함⁵⁶⁾
 - 납세자는 과세기간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납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⁵⁷⁾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해야 함⁵⁸⁾⁵⁹⁾
 -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됨

2.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로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가 있으며, 두 제도는 구분납부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경우, 전용거래계좌를 통해 대금을 납부하고 지정 금융기관은 대금에서 부가가치세액과 제품가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관청에 입금하고 제품가액은 공급자에게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됨
 -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액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됨

56)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검색일자: 2021. 8. 19.

57)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5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59) 국세청,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 7. 1, p. 21.

가. 금지금 및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⁶⁰⁾⁶¹⁾⁶²⁾

1) 개요

- 우리나라는 특정 시장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매입자납부특례제도⁶³⁾를 도입하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 2008년 금괴, 골드바 등의 금지금, 2009년에는 14K 이상의 고금, 2014년에는 구리 스크랩, 2015년에는 금 스크랩, 2016년에는 철 스크랩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우리나라의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재화는 다음과 같음
 - 금지금은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인 재화를 지칭함⁶⁴⁾
 - 금괴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금제품을 말하며, 이때 순도 58.5% 이상(14K 이상)인 재화를 지칭함⁶⁵⁾
 - 금 스크랩은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재화로 이때 금 함유량은 10만분의 1 이상인 재화를 지칭함⁶⁶⁾

6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108조의2(스크랩 등 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3(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조의9(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106조의13(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110조의2(스크랩 등 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61) 국세청(2016)을 인용

62) 박창덕·박미희·김병일, 2018, pp. 148~152.

6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6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6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6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 구리 스크랩은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서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재화를 지칭함⁶⁷⁾
- 철 스크랩은 관세율표상 7204, 74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을 지칭함⁶⁸⁾

〈표 III-1〉 우리나라의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시행시기
금지금	2008년 7월 1일 이후
고금	2009년 7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	2014년 1월 1일 이후
금 스크랩	2015년 7월 1일 이후
철 스크랩	2016년 10월 1일 이후

자료: 국세청, 2016, p. 5의 내용 인용

2) 적용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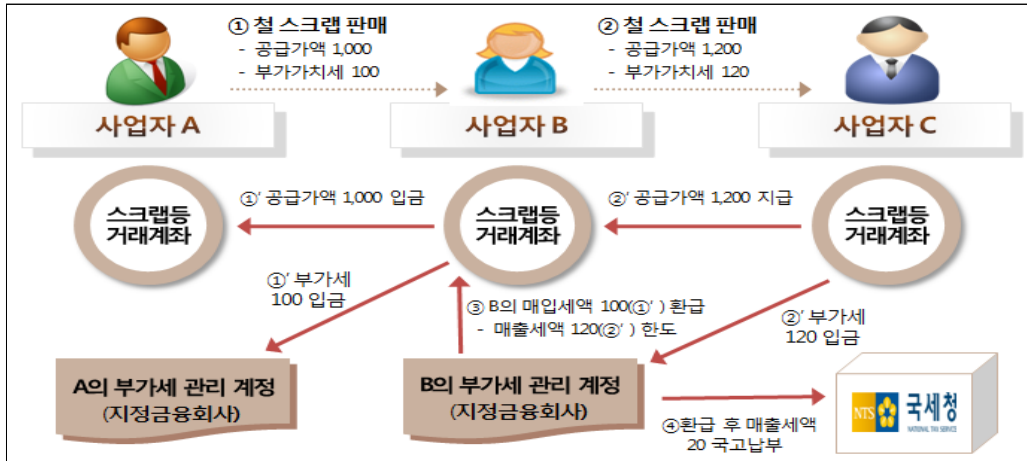
- 금제품을 포함한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 한정해 적용되며 관련 재화를 거래하는 사업자가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지정금융기관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함
 -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간 거래(B2C)에는 적용되지 않음
 - 최초의 지정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지만 2016년 10월 1일부터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정금융회사를 확대함
 -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제외), 대구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 산업은행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음

6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6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전용계좌는 13개 금융기관 중 특정 은행 1개만 선택하여 개설 가능하며 지정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함
 - 만약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를 국민은행으로 전용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면 신한은행 계좌를 해지한 이후 개설 가능함
 - 특정 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 개설은 가능함
 - 적용대상 재화를 거래하는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함
 - 금 관련 재화와 구리 및 철 스크랩 모두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이지만 적용법률 조항이 달라 각각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함
- 금을 포함한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결제 흐름은 [그림 III-1]과 같음
- (매입) B는 A로부터 스크랩 등을 1천원에 공급받아 매입세액 100원을 A의 지정 금융회사에 입금
 - (매출) B는 C에게 1,200원에 공급하여 B의 매출세액 120원을 C가 B의 지정 금융회사에 입금
 - (환급) 매출과 동시에 B의 매출세액 120원 중 기등록된 매입세액 100원을 B에게 즉시 환급
 - (국고납부) 과세기간(분기) 익월 25일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남아 있는 매출세액 20원을 국고에 입금
-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관련 사업자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를 실시간으로 환급하고 있음
- 매입자가 지정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스크랩 등의 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환급됨
 - 금지금 제련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환급받게 됨
 -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남게 되는 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매출자별로 국고로 입금됨

[그림 III-1]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결제흐름



자료: 국세청, 2016, p. 8.

3) 공급하는 자

- 스크랩 등의 제품을 거래하는 공급자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항목에 금액 기재 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함
-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대상 재화의 개별 공급마다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세금계산서 특례에 따라 매입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⁶⁹⁾
 - 공급자는 재화의 개별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⁷⁰⁾

69) 「부가가치세법」 제32조

70)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4) 공급받는 자

- 매입자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재화의 공급일과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의 익일 내에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함
 - 지정금융기관은 입금된 금액 중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분리하여 제품가액은 공급자에게 입금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 처리함
 - 단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⁷¹⁾으로 해당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전용거래계좌에 입금함
 - 지정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등록된 매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하여 지급하고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에 잔액을 국고에 입금함

5) 혜택 및 제재사항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이행한 납세자는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한 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⁷²⁾
 - 증가분 방식⁷³⁾은 전년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받는 형태임
 - 당기분 방식⁷⁴⁾은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공제받는 형태임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1) 기업구매자금대출,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외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전자 채권 등이 있음

7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73) 산출세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 \text{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0\%$

74) 산출세액 $\times \frac{\text{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text{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 \times 5\%$

- 전용계좌 미사용 시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매입자가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입금기한의 익일부터 입금일까지 1일당 세액의 0.00025%를 가산세로 부과함⁷⁵⁾

나.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⁷⁶⁾

1) 개요

- 우리나라는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B2C 거래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대리납부 제도를 적용함
-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는 국내 주점업에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됨
 - 주점업 중 적용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임
 - 호프전문점 및 소주방⁷⁷⁾(업종코드: 552205), 간이주점⁷⁸⁾(업종코드: 552209), 기타 서양식주점⁷⁹⁾(업종코드: 552208)은 해당되지 않음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8항

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77) 호프전문점 및 소주방은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주점을 지칭함

78) 간이주점은 대포집, 선술집 및 기타 간이 생맥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을 지칭함

79) 기타 서양식주점은 독립된 객실과接客원이 없이 양주(맥주 포함)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을 지칭함

〈표 III-2〉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적용대상 업종

구분	업종분류	적용범위	업종코드
일반 유흥 주점업	룸싸롱	독립된 객실에서 고급주류(양주, 맥주 등)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고급주점	552201
	빠	유흥종사자가 있는 서양식 주점으로서 싸롱이 아닌 곳	552202
	스탠드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스탠드빠	552202
	극장식식당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음식점	55220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552204
	기타 유흥주점	독립된 객실에서 주류와 그에 따른 안주를 제공하고 접객원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흥케 하는 유흥음식점 또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음식점	552206
무도 유흥 주점업	카바레, 나이트 클럽, 디스코 클럽, 고고 클럽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 연주 등을 감상하거나 손님이 직접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	552203
단란 주점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	552207

자료: 국세청, 2019, p. 13; 홈텍스,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업종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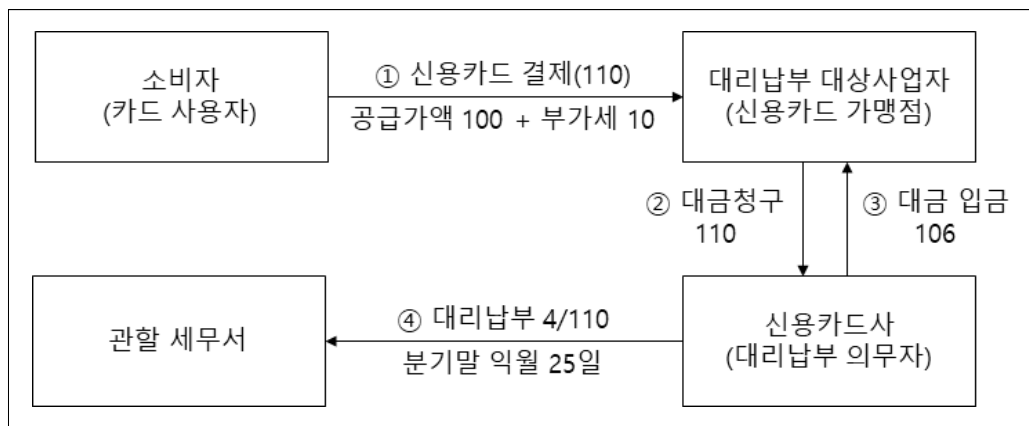
2) 적용방식

□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B2C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하고 다음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리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①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해당 판매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②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공급대금을 청구함

- ③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함
- ④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그림 III-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자료: 국세청, 『월간 국세』, 2019년 1월호, p. 10.

- 총 8개의 대리납부 담당 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그 외의 카드사는 지정된 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됨⁸⁰⁾
- 지정 신용카드사는 (주)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총 8개사임

3) 공급하는 자

- 공급자(신용카드 가맹점)는 공급대가의 일부(4/110)를 차감한 금액만 신용카드사로 부터 입금받음

80) 국세청,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18. 12. 26. 배포

- 징수율(공급대가의 110분의 4)은 유흥·단란주점업의 부가가치율⁸¹⁾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⁸²⁾
- 공급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정산해야 함⁸³⁾
- 공급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세액 공제할 수 있음⁸⁴⁾
 - 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액의 차감 후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함

4)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가 되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납부하게 됨
 - 소비자는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 기존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이 없음

5) 대리납부의무자

- 신용카드사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⁸⁵⁾

81)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100

82) 국세청 보도자료, 2018년 12월26일자 참고 3의 Q2.

8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8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8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제1항

-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대리납부에 필요한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함⁸⁶⁾
- 2020년 기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운영예산은 대리납부자인 신용카드사에 필요 경비⁸⁷⁾ 및 제도 홍보, 대상 사업자 안내 등으로 약 15억 1천만원이 사용됨⁸⁸⁾

8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87) 필요경비는 카드사의 대리납부제도 운영에 소요된 개발비·구축비·인건비 등임

88) 국회예산정책처, 2021, p. 150.

IV.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1. 영국

가. 일반적 징수제도

- 영국의 부가가치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며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⁸⁹⁾
 - 영국은 1973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됨
 -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됨⁹⁰⁾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임
 - 과세기간 동안 공급시기가 도래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매출세액 합계액임⁹¹⁾

89) 박정수, 2019, pp. 7~21.

90) 박정수, 2019, pp. 13~16.

91) 박정수, 2019, p. 81.

-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사용수익일에 의해 판단하며 용역은 작업 완료일에 의함⁹²⁾⁹³⁾
-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으로 관련 증빙(즉, 송장)을 구비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⁹⁴⁾⁹⁵⁾
 - 다만 매입자가 공급시기(또는 지급약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전부 또는 부분)에는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감액하고 추후 지급 시 매입세액공제를 증액함⁹⁶⁾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⁹⁷⁾
 - 사업자는 과세기간(매분기)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다만 간이과세자 등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함
 -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초과분을 환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가 아닌 월별 신고·납부 방식을 신청할 수 있음⁹⁸⁾⁹⁹⁾

92) IBFD - United Kingdo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5. Time of Taxation 5.1.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Last Reviewed: 19 February 2021.)

93) HMRC, VAT guide(VAT Notice 700), Section 14.2.1.

94) IBFD, United Kingdom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9.1.1. Requirements for deduction(Last Reviewed: 19 February 2021.)

95) HMRC, VAT guide(VAT Notice 700), Section 10.5.

96) HMRC, Relief from VAT on bad debts(VAT Notice 700/18), Section 4.

97) HMRC, <https://www.gov.uk/vat-annual-accounting-scheme>, 검색일자: 2021. 2. 15.

98) HMRC, VAT guide(VAT Notice 700), Section 20.3.2.

99) 영국 국세청은 2021년 3월부터 시작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설명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공급자의 현금흐름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신고납부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영국 정부, "VAT reverse charge technical guide," <https://www.gov.uk/guidance/vat-reverse-charge-technical-guide#flowcharts>, 검색일자: 2021. 6. 28.)

나. 매입자납부제도

1) 개요

- 영국은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에 국내거래를 대상으로 한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procedure)를 EU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⁰⁰⁾
 - 영국은 행방불명 사업자 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 하였음
 - 영국은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 사기 대응을 위해 사업자등록절차 강화, 탈세가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보류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침
 - 영국 정부의 사기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탈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행방불명 사업자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5천파운드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의 국내거래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참고로 영국은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은 국외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구분납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입법되지는 않았음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¹⁰¹⁾

- 영국은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
 - (요건 1) 영국 국내 공급
 - 다른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100) 김재진, 2010, pp. 100~102.

101) HMRC, VAT Notice 735. Section 4.; Section 5.

- (요건 2)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 사업목적의 공급일 것
 - B2C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급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당 번호가 유효한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가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업자가 고객에게 비사업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3)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나) 적용대상

- 영국은 2007년에 휴대폰 및 컴퓨터칩을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적용대상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크게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휴대폰 및 컴퓨터칩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이래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휴대폰이 용이하고 대량운반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화가 행방불명 사업자의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보아 ‘휴대폰 및 컴퓨터칩’을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사기에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임

〈표 IV-1〉 영국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시행시기
5천파운드 초과 휴대폰 및 컴퓨터칩	2007년 6월 1일 이후
탄소배출권(emission allowance)	2010년 11월 1일 이후
가스 및 전기 도매	2014년 7월 1일 이후
통신용역(telecommunication) 도매	2016년 2월 1일 이후
재생가능에너지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2019년 6월 14일 이후
건설용역	2021년 3월 1일 이후

자료: HMRC, VAT Notice 735. Section 3.1.

- 다른 재화 및 용역과는 달리 휴대폰 및 컴퓨터칩은 송장(invoice) 기준 공급가액¹⁰²⁾이 5천파운드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¹⁰³⁾
 - 송장별 금액이 5천파운드 이상인 경우 전체 거래금액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
 - 하나의 주문에 대해 다수의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문공급가액이 5천파운드를 초과하고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동의하면 전체 주문금액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
-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는 도입이 두 차례 연기되었으나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기 시작함
 - 건설업자 및 하청업자 등의 특정 건설용역으로 공급대가가 CIS(Construction Industry Scheme)¹⁰⁴⁾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됨
 - 건설용역의 경우 전체 공급대가 중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대가가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¹⁰⁵⁾

다) 적용방법

(1) 공급하는 자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102)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말함

103) HMRC, VAT Notice 735. Section 6.

104) CIS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지급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시 국세청에서 규율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모든 원도급자는 국세청의 CIS에 등록하여야 함(HMRC, CIS 340 Construction Industry Scheme, 2021, pp. 5~7)

105) 영국 정부, "VAT reverse charge technical guide," <https://www.gov.uk/guidance/vat-reverse-charge-technical-guide>, 검색일자: 2021. 6. 30.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 하여야 함¹⁰⁶⁾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송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해당 거래가 매입자납부제도 적용임을 송장에 명시하여야 함¹⁰⁷⁾
 - 국세청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송장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되 총청구 부가가치세액(total VAT charged)에만 기재하지 않음
- 공급자가 휴대폰 및 컴퓨터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거래개시통보 및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 공급자는 휴대폰 및 컴퓨터칩을 최초로 공급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때에 국세청에 개시일자, 공급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통보하여야 함
 - 최초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휴대폰 및 컴퓨터칩을 공급하는 날 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관련 자료의 통보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¹⁰⁸⁾
 - 휴대폰 및 컴퓨터칩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에 거래명세서(Reverse Charge Sales Li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고로 그 외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대한 통보 및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 또한 공급자는 매입자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확인하여야 함
 - 제시받은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의 유효성 및 매입자의 등록번호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휴대폰 및 컴퓨터칩 등의 경우 기준금액 이하로 거래금액을 세분화하려는 경우 합리적 이유의 유무 등에 대해 확인하고 기록화가 필요함¹⁰⁹⁾

106) HMRC, VAT Notice 735. Section 7.7.

107) HMRC, VAT Notice 735. Section 7.6.

108) HMRC, VAT Notice 735. Section 11.

-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매입자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급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¹⁰⁹⁾
 -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거나 매입자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 그러나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잘못 적용하였거나 매입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2) 공급받는 자¹¹¹⁾

- 매입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매입자는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적용됨
- 매입자는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세액이 완전공제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받은 매입자가 이후 해당 재화 및 용역을 다른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후속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여야 함
 - 반면 매입자가 해당 재화 및 용역을 그 외의 상황하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후속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함

109) HMRC, VAT Notice 735. Section 9.3.1.

110) HMRC, VAT Notice 735. Section 9.4.

111) HMRC, VAT Notice 735. Section 8.

- 매입자가 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가산세와 이자세가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급망의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손실에 대해 연대납부의무(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발생할 수 있음
 - 거래가 부가가치세 사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한다면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음

2. 독일

가. 일반적 징수제도

- 독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공급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 독일은 196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세제는 1980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UStG)」을 기본으로 수차례 개정된 형태임¹¹²⁾
 - 2005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Umsatz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UStDV)」과 2010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규정(Umsatzsteuer -Anwendungserlass, UStAE)」이 적용됨
 - 납세자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상업적 또는 전문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임¹¹³⁾

112)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1.1. General (Last Reviewed: 1 April 2021.)

113) UStG(Umsatzsteuergesetz,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납세자인 사업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¹¹⁴⁾
-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됨¹¹⁵⁾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임
 -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자는 매입세액과 관련한 증빙(송장 또는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¹¹⁶⁾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함¹¹⁷⁾¹¹⁸⁾
 - 사업자는 과세기간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실제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직전 연도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7,5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매월 예정신고를 함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1천유로 이상 7,5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매분기 예정신고 의무를 가짐
 -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1천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함
 - 납세자는 매년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정산신고(Steueranmeldung)를 위해 확정신고(Steuerekl  rung)서를 전자로 제출해야 함

European Union VAT Directive 2006/112 제9조 제1항

114)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1.1. General (Last Reviewed: 1 April 2021.)

115) UStG 제16조 제2항

116) UStG 제15조

117) UStG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118) UStG 제18조 제1항

- 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서 제출 시 과세연도 종료 후 익년 5월 31일, 세무사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익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 납세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¹¹⁹⁾
 -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월되지 않음
 - 당국이 해당 사항을 사기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환급을 지불하기 전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¹²⁰⁾

나. 매입자납부제도

1) 개요

- 독일은 특정 재화의 국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함¹²¹⁾
 - 국내 사업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에 적용하는 매입자납부제도와 동일한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건축, 수리, 보수, 유지, 철거 등에 대한 용역, 가스와 전기 공급, 5천유로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 직접회로 등 적용되는 범위가 넓음
- 참고로 독일은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119)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 9.1.2. Excess input tax (Last Reviewed: 1 April 2021.)

120) UStG 제18f조

121) 김재진·홍성열·이형민, 2015, pp. 52~53.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독일은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¹²²⁾¹²³⁾
 - (요건 1) 독일 국내 공급
 - 다른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음
 - (요건 2)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의 사업목적 공급일 것
 - 일반적으로 B2C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급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당 번호가 유효한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가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업자가 고객에게 비사업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3)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매입자납부제도는 현금주의회계(Cash accounting) 등과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음¹²⁴⁾¹²⁵⁾

나) 적용대상

- 독일은 특정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국내거래에 도입한 이래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탄소배출권 거래 등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¹²⁶⁾¹²⁷⁾

122) UStG 제13b조

123)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1 April 2021.)

124)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5. Time of Taxation - 5.1.5. Cash accounting(Last Reviewed: 1 April 2021.)

125)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 9.1.4. Cash accounting(Last Reviewed: 1 April 2021.)

126) 김재진·홍성열·이형민, 2015, pp. 52~53.

- 독일 내의 부동산 및 담보로 제공되는 재화¹²⁸⁾와 독일 내의 건축(Bauleistungen), 수리, 유지, 철거¹²⁹⁾ 및 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 등의 용역 공급 등¹³⁰⁾
 - 탄소배출권 거래 및 가스·전기 관련 인증서 거래¹³¹⁾
 - 가스·전기 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수취인 모두 재판매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적용¹³²⁾
 - 냉난방 공급, 특정 재생원료, 철 및 비철 금속폐기물, 플라스틱, 고무 등의 폐기물, 전지폐기물 등의 재화 공급¹³³⁾¹³⁴⁾
 - 단일 거래금액이 5천유로 이상인 이동전화기, 일부 IC(집적회로) 공급거래 및 게임 콘솔, 태블릿 컴퓨터¹³⁵⁾
 - 귀금속 및 귀금속폐기물 등의 공급¹³⁶⁾
 - 가스 및 전기 관련 인증서 거래¹³⁷⁾
- 독일은 통신서비스 재판매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음
- 2020년 「연간조세법(Entwurf eines Jahressteuergesetzes 2020)」 법안 초안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통신서비스 재판매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음¹³⁸⁾

127)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2. Specif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Last Reviewed: 1 April 2021.)

128) UStG 제13b조 제2항 제3호

129) UStG 제13b조 제2항 제4호

130) UStG 제13b조 제2항 제8호

131) UStG 제13b조 제2항 제6호

132) UStG 제13b조 제2항 제5호

133) UStG 제13b조 제2항 제7호; UStG의 Annex 3

134) TNS:2010-05-25:DE-2

135) UStG 제13b조 제2항 제10호

136) UStG 제13b조 제2항 제9호 및 제11호

137) UStG 제13b조 제2항 제6호

138) IBFD, 2020.

다) 적용방법

(1) 공급하는 자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¹³⁹⁾¹⁴⁰⁾
 - 관리 의무의 측면에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은 예비 및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순송장(a net invoice without stating VAT)을 발행해야 함¹⁴¹⁾¹⁴²⁾¹⁴³⁾¹⁴⁴⁾
 - 2013년 1월 1일부터 공급자는 해당 거래가 매입자납부제도임을 명시하기 위해 “Steuerschuldnerschaft des Leistungsempfängers(수취인은 세금 납부 책임 있음)”이란 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¹⁴⁵⁾

(2) 공급받는 자¹⁴⁶⁾

- 매입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매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139) UStG 제13b조

140)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1 April 2021.)

141) UStG 제13b조

142)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1 April 2021.)

143)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1. Administrative Obligations(Last Reviewed: 1 April 2021.)

144) IBFD -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1. Administrative Obligations- 11.2.1. Issue of tax invoices(Last Reviewed: 1 April 2021.)

145) UStG 제14a조 제5항

146) UStG 제13b조

- 매입자는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매입자는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세액이 완전공제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위반 사항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¹⁴⁷⁾

3. 프랑스

가. 일반적 징수제도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제도는 공급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¹⁴⁸⁾
 - 프랑스는 1917년에 지출세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세제는 1954년에 제정된 법을 기본으로 수차례 개정된 형태임¹⁴⁹⁾
 - 납세자는 독립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임¹⁵⁰⁾
 - 납세자인 사업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¹⁵¹⁾

147) UStG 제26b조

148) TVA(Taxe sur la Valeur Ajoutée, 프랑스 부가가치세)-CGI 제256A조; 제283조의0

149) IBFD -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1.1. General (Last Reviewed: 1 January 2021.)

150) CGI 제256A조-TVA(Taxe sur la Valeur Ajoutée, 프랑스 부가가치세)

151) CGI 제256A조; 제283조

-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됨¹⁵²⁾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매월 규정된 양식(CA3)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의무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으로서, 관련 증빙(즉 송장(facture))을 구비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¹⁵³⁾¹⁵⁴⁾
 -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였고 납세자가 송장을 교부 받아야 함¹⁵⁵⁾
 - 송장은 종이나 전자형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발행한 원본 송장의 사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¹⁵⁶⁾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 등은 분기 또는 연도별 신고·납부할 수 있음¹⁵⁷⁾
 -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4천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함
 -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연도별로 신고·납부함
 - 환급세액이 15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신청할 수 있음¹⁵⁸⁾¹⁵⁹⁾

152) CGI 제267조 제I항; 제266조 제I항

153) CGI 제271조 제I항

154) Franc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 13.10.2. Invoices(Last Reviewed: 1 May 2021.)

155) CGI 제271조 제II항; 제289조 제I항

156) CGI 제287조

157) IBFD -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1. Administrative Obligations - 11.4.1. Resident taxable persons(Last Reviewed: 1 January 2021.)

158) 환급세액이 15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 흡수될 때까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됨

159) IBFD -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 환급세액이 150유로 이상 76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역년 1월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
- 환급세액이 760유로 이상인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환급신청할 수 있음

나. 매입자납부제도¹⁶⁰⁾

1) 개요

- ☐ 프랑스는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에 매입자납부제도(Comment fonctionne l'autoliquidation)를 도입함¹⁶¹⁾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함
- ☐ 참고로 프랑스는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 프랑스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¹⁶²⁾¹⁶³⁾

of Input Tax - 9.1.2. Excess input tax(Last Reviewed: 1 January 2021.)

160) 프랑스 국세청 법령사이트, "TVA-Régimes d'imposition et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Redevable de la taxe - Livraisons de biens et prestations de services-Détermination du redevable," <https://bofip.impots.gouv.fr/bofip/3218-PGP.html/identifiant=BOI-TVA-DECLA-10-10-20-20210421#>, 검색일자: 2021. 8. 9.

161) 프랑스 국세청 법령사이트, "TVA - Régimes d'imposition et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Redevable de la taxe-Livraisons de biens et prestations de services-Détermination du redevable," <https://bofip.impots.gouv.fr/bofip/3218-PGP.html/identifiant%3DBOI-TVA-DECLA-10-10-20-20200311>, 검색일자: 2021. 8. 9.

- (요건 1) 프랑스 국내 공급
 - 다른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의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음
- (요건 2)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의 사업목적의 공급일 것
 - 일반적으로 B2C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급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당 번호가 유효한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가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3)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나) 적용대상¹⁶⁴⁾

- 프랑스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¹⁶⁵⁾¹⁶⁶⁾
 - 산업폐기물 및 회수 가능한 재료(déchets neufs d'industrie and matières derécupération) 관련 재화 및 용역¹⁶⁷⁾
 - 전자통신 서비스 관련 재화 및 용역¹⁶⁸⁾
 - 탄소배출권 또는 원산지 보증서(certificats de garanties d'origine, CGO)¹⁶⁹⁾ 양도 및 전기용량 보증서 거래¹⁷⁰⁾

162) CGI 제283조

163) IBFD -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1 January 2021.)

164) 프랑스 국세청 법령사이트, "TVA - Régimes d'imposition et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 -Redevable de la taxe - Livraisons de biens et prestations de services-Détermination du redevable," <https://bofip.impots.gouv.fr/bofip/3218-PGP.html/identifiant=BOI-TVA-DECLA-10-10-20-20210421#>, 검색일자: 2021. 8. 9.

165) CGI 제283-0조; 제283조

166) 프랑스 국세청 법령사이트, "TVA - Régimes d'imposition et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 -Redevable de la taxe - Livraisons de biens et prestations de services-Détermination du redevable," <https://bofip.impots.gouv.fr/bofip/3218-PGP.html/identifiant%3DBOI-TVA-DECLA-10-10-20-20200311>, 검색일자: 2021. 8. 9.

167) CGI 제283조 제2 sexies항

168) CGI 제283조 제2 octies항

169) 내부 전력시장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 「유럽지침」 2001/77/CE

170) CGI 제283조 제2 septies항

- 가스 및 전기에너지 관련 재화 및 용역¹⁷¹⁾¹⁷²⁾¹⁷³⁾
- 부동산과 관련한 건설공사의 하도급¹⁷⁴⁾

다) 적용방법

(1) 공급하는 자¹⁷⁵⁾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
 - 다만 관리 의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송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Autoliquidation, article 283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문구 작성을 통해 해당 거래가 매입자납부제도 적용임을 송장에 명시하여야 함¹⁷⁶⁾

(2) 공급받는 자¹⁷⁷⁾

- 매입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171) CGI 제283조 제2 quinquies항

172) European Commission, 2014, p. 116.

173)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réforme de l'état, 2012.

174) CGI 제283조 제2 nonies항

175) 프랑스 국세청 법령사이트, “TVA - Régimes d'imposition et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 Obligations et formalités déclaratives-Déclaration des opérations réalisées et paiement de l'impôt - Déclaration des échanges de biens et déclaration européenne de services entre É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https://bofip.impots.gouv.fr/bofip/979-PGP.html/identifiant=BOI-TVA-DECLA-20-20-40-20120912>, 검색일자: 2021. 8. 19.

176) European Commission, 2014, p. 118.

177) IBFD -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1 January 2021.)

의무가 있음

- 매입자는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매입자는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세액이 완전공제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매입자가 적용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¹⁷⁸⁾
 - 단 과세당국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매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4. 이탈리아

가. 일반적 징수제도

-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제도는 공급자를 납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¹⁷⁹⁾
 - 이탈리아는 1973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세제는 1973년에 제정된 법률 기본으로 수차례 개정된 형태임¹⁸⁰⁾
 - 이탈리아는 1993년과 2010년에 개정하며 현행 세제의 기본틀을 잡음
 - 납세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¹⁸¹⁾

178) CGI 제1788a조; 제287조

179) IVA(Imposta sul Valore Aggiunto,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180)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1.1. General (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181) IVA 제17조 제1항

- 납세자인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¹⁸²⁾
-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됨¹⁸³⁾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임
 -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으로서 관련 증빙(즉 송장)을 구비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¹⁸⁴⁾¹⁸⁵⁾¹⁸⁶⁾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역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¹⁸⁷⁾
 - 사업자는 과세기간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역년이지만 사업자는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3년간 이월공제됨
 - 이탈리아는 사업 청산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고 있음

182) IVA 제17조 제1항

183) IVA 제13조; 제14조

184) IVA 제19조

185) Circular letter 1/E/2018

186)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187) 이탈리아 기획재정부, "Paying VAT,"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web/english/paying-vat>, 검색일자: 2021. 7. 14.

나. 매입자납부제도

1) 개요

-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 국내거래를 대상으로 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⁸⁸⁾
 - 이탈리아는 국내 거래와 관련한 납부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기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기존의 비거주자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과 동일하게 적용함
 - 이탈리아는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음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이탈리아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함
 - (요건 1) 이탈리아 국내 공급
 - 다른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2)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의 사업목적의 공급일 것
 - 공급자는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당 번호가 유효한 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사업자가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3)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요건 4) 공급받는 자가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¹⁸⁹⁾

188) 이탈리아 의회 관보 77/388/EEC

189) IVA 제17-ter조

- 매입자납부제도는 현금주의회계(Cash accounting) 등과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음¹⁹⁰⁾¹⁹¹⁾

나) 적용대상

- 이탈리아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국내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¹⁹²⁾¹⁹³⁾¹⁹⁴⁾
-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 산업용 금 판매
 - 건설 관련 하도급 용역 제공
 - 건축, 건물 청소, 철거,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 공급
 - 휴대폰 및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등의 판매
 - PC,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게임 콘솔 등의 판매
 - 철금속 스크랩, 종이·고무·유리·플라스틱 등 폐기물 등의 판매
 - 이때 해당 폐기물은 재화 사용,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하게 처리해야 함
 - 비철금속¹⁹⁵⁾ 스크랩 및 폐기물 등의 판매
 -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부문 관련 재화 및 용역 공급

다) 적용방법

(1) 공급하는 자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90)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5. Time of Taxation - 5.1.5. Cash accounting(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191) IBFD, "Cash accounting scheme amend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2-12-07_it_1.html, 검색일자: 2021. 8. 3.

192) EY, 2021, p. 749.

193) IVA 제17조

194)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 - 10.1.2.2. Specif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195) 정제된 구리, 니켈 원료 등

납부의무가 없음¹⁹⁶⁾

- 다만 관리 의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공급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송장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하되 해당 거래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받음을 송장에 명시하여야 함¹⁹⁷⁾
 - 공급자는 송장에 “operazione non soggetta(자체 청구)”라는 문구를 기입해야 함
 - 전자송장의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기입할 필요없이 전자송장상에서 기입됨
- 이탈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¹⁹⁸⁾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세액이 완전공제 가능한 납세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500~2만유로의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가능한 거래가 일반회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등록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세금액의 5~1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해당 금액은 최소 1천 유로임
 - 부가가치세 미납자에게 부당 부가가치세 공제(부가가치세액의 90% 가산세) 및 불성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액의 90~180% 가산세) 등 사안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함
 - 공급자 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250~1만 유로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관련 부가가치세의 90~180%에 달하는 금액임

196)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197)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1. Administrative Obligations - 11.2. Invoicing(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198)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5. Powers of Tax Authorities - 15.3. Penalties(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2) 공급받는 자¹⁹⁹⁾

- 매입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매입자는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세액이 완전공제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이탈리아는 공급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위반 시 적용받는 가산세를 매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내용은 공급자의 가산세와 동일함²⁰⁰⁾

다. 구분납부제도²⁰¹⁾²⁰²⁾1) 개요²⁰³⁾

- 이탈리아는 2017년부터 국유재산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사기의 가능성을 막고자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²⁰⁴⁾²⁰⁵⁾
 - 2017년 도입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을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다가 2018년에 이탈리아 증권거래소(Borsa Italiana)에 상장된 회사,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199)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2. Reverse charge/withholding mechanisms(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200)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5. Powers of Tax Authorities - 15.3. Penalties(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201) Agenziaentrate, 2018.

202) IVA 제17 ter조 제1-bis항

203) IBFD, "Italy - Split-Payment Mechanism for Public Bod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vm/html/ivm_2015_02_it_2.html, 검색일자: 2021. 8. 3.

204)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21-Italy*, p. 752.

205) IVA 제17-ter조

- 이탈리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며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송장방식을 도입함²⁰⁶⁾²⁰⁷⁾
 - 이탈리아에 설립된 당사자 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송장 작성 및 수정사항은 세무당국의 Sdi(sistema di interscambio)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됨
- 이탈리아 구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으로 매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일반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로 입금함²⁰⁸⁾
- 구분납부제도는 현금주의회계(Cash accounting) 등과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음²⁰⁹⁾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이탈리아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기관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²¹⁰⁾
 - (요건 1) 이탈리아 국내 공급
 - 다른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2)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기관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

206) IBFD, “Electronic storage of invoices - resolution publish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7-05-02_it_2.html, 검색일자: 2021. 8. 3.

207) IBFD, “Electronic invoicing - clarifications issue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it_20190705_1227.html, 검색일자: 2021. 8. 3.

208) Aneta Nowak-Piechota, “Mechanizm podzielonej płatności-ocena nowej regulacji,” *Kwartalnik Prawa Podatkowego* Nr 2/2018, 2018, pp. 122~123.

209)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5. Time of Taxation - 5.1.5. Cash accounting(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210)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Last Reviewed: 15 March 2021.)

나) 적용대상²¹¹⁾

□ 이탈리아는 다음의 대상²¹²⁾에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²¹³⁾

- 정부 또는 개별 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 특수기업 및 공익기업을 포함한 국가, 지역 및 지방공공단체
- 전체 기부금 비율이 70% 이상인 공공기관 소유재단
-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전체 자본비율 7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재단 및 회사
- 이탈리아 국영증권거래소(Borsa Italiana)의 FTSE MIB 지수²¹⁴⁾에 포함된 상장기업

다) 적용방법

(1) 공급하는 자

□ 공급자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

- 다만 관리 의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공급자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에 재화 및 용역 공급 시 송장에 “l'evidenziazione dell'imposta(세금납부)” 및 “scissione dei pagamenti(구분납부)” 등의 문구를

211) 자세한 적용대상 리스트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2018년부터 고시하고 있음
이탈리아 재무부, “Scissione dei pagamenti,” https://www1.finanze.gov.it/finanze3/split_payment/public/#/#testata, 검색일자: 2021. 7. 27.

212) 이탈리아 「민법」 제2359조 제1항 및 제2항

213) 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10.1.4. Other systems (Last Reviewed: 31 December 2020.)

214) FTSE MIB 지수는 2004년 9월 MIB-30을 대체한 이탈리아 국영증권거래소(Borsa Italiana)의 주식 시장 지수를 말하며, 해당 지수는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40개 종목으로 구성됨
위키디피아, “FTSE MIB,” https://en.wikipedia.org/wiki/FTSE_MIB, 검색일자: 2021. 8. 9.

이용해 구분납부방식이란 표식을 기재해야 했지만 2018년 7월 14일부터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²¹⁵⁾

- 2019년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 설립된 당사자 간의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송장 작성 및 수정사항은 세무당국의 Sdi(sistema di interscambio)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됨²¹⁶⁾
 -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의 경우, 전자송장에 부가가치세 입력 시 적용대상이라는 표시와 함께 “S”가 송장에 표시됨
 - 공급자는 세금이 완전히 정산될 때까지 발행한 송장의 원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탈리아는 구분납부제도의 적용대상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공급자에 한해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¹⁷⁾

- 환급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구분납부제도에 적용되는 공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선적으로 환불해야 함

□ 공급자는 매입자에게 구분납부제도 적용 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2) 공급받는 자²¹⁸⁾

□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매입자는 공급받는 재화 및 용역의 매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매입자는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관련 세액을 부가가치세 입금 전용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215) DL 87/2018 제12조

216) IBFD - Ital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3. Value Added Tax - 13.10.2. Invoices(Last Reviewed: 15 April 2021.)

217) IBFD, “Italy - Split-Payment Mechanism for Public Bod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vm/html/ivm_2015_02_it_2.html, 검색일자: 2021. 8. 9.

218)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Last Reviewed: 15 March 2021.)

- 이탈리아의 구분납부제도는 적용대상 기관 및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과 부가가치세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되는 곳에 일정 양식을 제출해 '부가가치세 전용계좌(F24 form)'를 개설해 해당 계좌로 납부해야 함²¹⁹⁾
 -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과 부가가치세 계좌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form F24 Public Bodies'를 통해 개설 가능함
 - 이탈리아 국세청(the Agenzia delle Entrate) 또는 이탈리아 우체국(Poste Italiane)과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F24 form'을 통해 개설 가능함
- 매입자는 아래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구분납부제도 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매월 16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누적해 해당 누적액을 일괄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 매월 16일까지 건별로 별도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 구분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미납부액 또는 지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5. 폴란드

가. 일반적 징수제도

-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음

219) IBFD, "Italy - Split-Payment Mechanism for Public Bod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vm/html/ivm_2015_02_it_2.html, 검색일자: 2021. 8. 3.

- 폴란드는 1993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현재의 부가가치세제는 2004년의 개정세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²²⁰⁾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으로 부가가치세제를 전면 개편함
 - 납세의무자는 목적 및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임²²¹⁾
 -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²²²⁾
-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됨²²³⁾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임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원칙적으로 재화가 공급되거나 용역이 완료되는 때)에 발생함²²⁴⁾
 -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관련 송장을 교부받아야 함
 - 매입자가 계약 및 송장상의 대금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9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하여야 하며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증액함²²⁵⁾

220)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1.1. General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21) UPTiU(Ustawa o podatku od towarow i uslug, 폴란드 「부가가치세법」) Article 15-17.

222)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1.1. General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23) UPTiU Article 86.

224)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5. Time of Taxation(Last Reviewed: 15 March 2021.)

225) UPTiU Article 89b.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매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²²⁶⁾
 - 사업자는 과세기간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월마다 신고·납부되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²²⁷⁾
 -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초과분을 환급하여야 함²²⁸⁾
 - 납세자는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거나 차기 이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²²⁹⁾
 - 과세관청은 60일 이내 환급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나. 구분납부제도

1) 개요²³⁰⁾

-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에 철강, 스크랩 등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음
 - 폴란드는 2015년 7월부터 철강, 스크랩 등을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226)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9.1.1. Requirements for deduction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27) UPTiU Article 99.

228)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9.1.2. Excess input tax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29) UPTiU Article 87.

230) European Committee, "Proposal for a COUNCIL IMPLEMENTING DECISION authorising Poland to introduce a special measure derogating from Article 226 of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A52019PC0010&from=EN>, 검색일자: 2021. 7. 2.

- 이후 특정 금·은 제품, 탄소배출권, 특정 건설용역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²³¹⁾
-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기준금액(threshold)은 없음
- 부가가치세 사기방지를 위해 폴란드는 매입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표준감사파일,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절차 강화, 부가가치세 신고주기의 단축²³²⁾ 등의 조치를 병행하였음
- 폴란드는 매입자납부제도 등의 기존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사기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년 11월부터 기존 매입자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분야 등에 대해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함
 - EC는 폴란드의 구분납부제도 도입·운영을 한시적(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으로 승인함
 - 이에 따라 폴란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기존에 강제적 매입자납부제도 및 매입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하던 분야 등에 대해 강제적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함
 - 폴란드는 2018년 7월부터 매입자의 선택에 의한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폴란드 정부는 부가가치세 사기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강제적 구분납부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²³³⁾²³⁴⁾
 - 매입자는 구분납부제도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구분납부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폴란드 정부는 구분납부제도의 도입으로 부가가치세 갭을 0.5%p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²³⁵⁾

231)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10.1.2.2. Specif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32) 2017년부터 소규모 사업자 이외에는 더 이상 분기별 신고를 하지 못함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1. Administrative Obligations - 11.4. VAT returns and remittance of VAT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33) TPA Poland, "MANDATORY VAT SPLIT PAYMENT MECHANISM IN POLAND AS OF SEPTEMBER 2019,"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19/07/TPA-Poland_Mandatory-VAT-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34) 폴란드 정부는 당초 2019년 7월부터 강제적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기업의 준비상태로 점을 고려하여 두 차례(9월, 11월) 연기하여 2019년 11월부터 제도를 시행함 (Avalara, "Poland delays VAT split payments till Nov 2019," <https://www.avalara.com/vatlive/en/vat-news/poland-delays-vat-split-payments-till-nov-2019.html>, 검색일자: 2021. 7. 22.)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국내 사업자 간 거래로서 송장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특정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여야 함²³⁶⁾
 - (요건 1) 폴란드 국내 공급
 - 다른 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2)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의 과세대상 공급일 것
 -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3) 송장가액이 PLN1만 5천²³⁷⁾을 초과할 것
 - 기준금액은 송장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계약상 총금액이 아닌 매진당 수수하는 송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²³⁸⁾
 -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기준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도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²³⁹⁾
 - (요건 4)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송장의 거래가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나 이 중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등의 거래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금액에 한해서는 반드시

235) REPUBLIC OF POLAND, 2019, p. 47.

236)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37) 한화로 약 445만원(2021. 7. 26. 기준)에 해당하며, 외화의 경우 PLN1만 5천과 유사한 금액을 말함

238)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39) Bloomberg Tax, "Value-Added Tax Navigator - Europe, Poland, 10. Administrative Matter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C418?bc=W1siRG9jdW1lbnQiLCIvcHJvZHVjdC90YXgvZG9jdW1lbnQvWE5QU0M5MTgiXV0--a2054e82793e34a04ee73ce77c08783fc401698f&jcsearch=bn%2520vatn%2520pl%252010%25283%2529%25284%2529#jcite>, 검색일자: 2021. 7. 22.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여야 함²⁴⁰⁾²⁴¹⁾

- 예를 들어 송장의 거래가액은 PLN1만 6천이나 이 중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가액이 PLN1천이라면 PLN1천만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납부방식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그 외의 거래가액은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에 대해 구분납부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음

- 최초 송장의 거래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였으나 이후 거래가액이 상향 수정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²⁴²⁾
 - 송장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의 수정 없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구분납부방식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나)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은 약 150개에 해당하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을 열거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Annex 15에서는 관련 재화 및 용역을 열거하고 있음
- 폴란드는 기존 강제적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던 재화 및 용역뿐만 아니라 석탄, 전자부품 등에 대해서도 강제적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대표적인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철, 스크랩 등이 있음

240)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41) KPMG, "Split Payment Mechanism: a controversial tool for fighting VAT fraud," <https://home.kpmg/pl/en/home/insights/2019/12/split-payment-mechanism-a-controversial-tool-for-fighting-vat-fraud.html>, 검색일자: 2021. 7. 9.

242)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 철, 귀금속, 비철금속
- 프로세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게임 콘솔과 같은 전자장치
- 폐기물, 스크랩, 재활용품
- 석유
- 자동차부품 및 악세사리
- 석탄 및 석탄 제품
- 특정 건설용역
- 탄소배출권

다) 적용방법

- 폴란드의 구분납부제도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바탕으로 운영됨
 - 즉 구분납부제도는 폴란드 은행을 통한 ‘전자적 송금(electronic bank transfer)’ 거래에 대해서만 인정됨²⁴³⁾
 - 그 외의 방식에 의한 지급(예: 신용카드, 환어음)은 인정되지 않음
- 매입자가 금융기관에 공급대가를 송금하면서 해당 거래가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 중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일반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로 이체함²⁴⁴⁾²⁴⁵⁾
 - 매입자는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 송장번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거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243)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44)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Last Reviewed: 15 March 2021.)

245) Bloomberg Tax, “Value-Added Tax Navigator-Europe, Poland, 10. Administrative Matter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C418?bc=W1siRG9jdW11bnQiLCIvcHJvZHVjdC90YXgvZG9jdW11bnQvWE5QU0M5MTgiXV0--a2054e82793e34a04ee73ce77c08783fc401698f&jcsearch=bn%2520vatn%2520pl%252010%25283%2529%25284%2529#section\(3\)\(3\)\(4\)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C418?bc=W1siRG9jdW11bnQiLCIvcHJvZHVjdC90YXgvZG9jdW11bnQvWE5QU0M5MTgiXV0--a2054e82793e34a04ee73ce77c08783fc401698f&jcsearch=bn%2520vatn%2520pl%252010%25283%2529%25284%2529#section(3)(3)(4)_0), 검색일자: 2021. 7. 6.

- 매입자는 개별 공급처에 귀속되는 다수의 송장을 한 번의 자금이체로 처리할 수 있음²⁴⁶⁾²⁴⁷⁾²⁴⁸⁾
 - 매입자는 1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한 공급자가 발행한 송장에 대해서 일괄하여 한 번에 구분납부방식에 의해 지급할 수 있음

- 구분납부제도 대상인 공급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상계하는 경우에는 구분납부 제도를 적용할 의무가 없음²⁴⁹⁾²⁵⁰⁾
 - 다만 상계 후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여야 함

- 한편 폴란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주기를 분기로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분납부제도 대상자는 특례 적용에 제한을 받음
 - 폴란드는 원칙적으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신고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및 과거 4연속 과세기간 동안 구분납부제도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Annex 15’에 열거된 재화 및 용역의 대가가 PLN5만/월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²⁵¹⁾

246) PWC, “Mandatory split payment from November 2019,” <https://www.pwc.pl/en/articles/tax-news/2019/2019-01-28-mandatory-split-payment.html>

247)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48) UPTiU Article 108a. paragraph 3a.

249)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Last Reviewed: 15 March 2021.)

250)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51)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5. Powers of Tax Authorities - 11.4. VAT returns and remittance of VAT(Last Reviewed: 15 March 2021.)

(1) 공급하는 자

- 공급자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
- 공급자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송장에 “mechanizm podzielonej płatności(구분납부방식)”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관련 부가가치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²⁵²⁾
 - 다만 공급자가 송장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납부방식에 의해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공급자가 형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규제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인 경우에는 30%의 가산세 대신 약 PLN620만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2) 공급받는 자

- 매입자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공급자가 송장에 “mechanizm podzielonej płatności(구분납부방식)”라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입자는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²⁵³⁾
- 매입자는 송장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매입자의 폴란드 은행계좌에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와 연계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²⁵⁴⁾

252)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5. Powers of Tax Authorities - 15.3. Penalties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53)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254)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 (Last Reviewed: 15 March 2021.)

- 부가가치세액은 반드시 폴란드 화폐(PLN, 즈위티)로 지급되어야 함
 - 당사자 간 지급약정계약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외화로 지급될 수 없음
 - 공급가액은 폴란드 화폐 또는 외화로 지급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을 폴란드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한 번에 총액의 송금이 가능함
 - 반면 공급가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일반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두 번의 송금절차가 필요함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 송금 시 반드시 공급가액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²⁵⁵⁾
- 송장에 “mechanizm podzielonej płatności(구분납부방식)”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납부제도를 통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²⁵⁶⁾
- 매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형법에 의해 PLN2,500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함²⁵⁷⁾
- 송장의 전체 거래금액 중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중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불공제함²⁵⁸⁾

255) BNP PARIBAS, “Can I pay only the invoice VAT amount with the Split Payment? How can I do it?,” <https://www.bnpparibas.pl/przedsiębiorstwa/platnosci/split-payment-english>, 검색일자: 2021. 8. 5.

256)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5. Powers of Tax Authorities - 15.3. Penalties(Last Reviewed: 15 March 2021.)

257) KPMG,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from 1st November 2019,”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pl/pdf/2019/09/pl-en-tax-alert-KPMG-2019-09-24-mandatory-split-payment-mechanism-from-1-st-november-2019.pdf>, 검색일자: 2021. 7. 6.

258) TPA Poland, “Mandatory split payment mechanism in the light of Minister of Finance’s explanations,” https://www.tpa-group.pl/wp-content/uploads/sites/4/2020/01/TPA-Poland_mandatory-split-payment.pdf, 검색일자: 2021. 7. 6.

(3) 부가가치세 전용계좌(VAT account)²⁵⁹⁾

- 폴란드 은행 및 신용조합(SKOK)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라 불리는 특별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함²⁶⁰⁾
 - 모든 사업자는 폴란드 화폐로 계상되는 일반 은행계좌(ordinary bank account)를 가져야 하며 폴란드 은행 등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자동 발급함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의 개설과 유지비용은 무료임
 -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매입하는 외국단체는 반드시 폴란드 은행에서 폴란드화폐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국외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외국단체가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폴란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다만 외국법인은 폴란드 은행계좌 유지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는 사업자당 1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음²⁶¹⁾
 - 사업자가 다수의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원하는 경우 추가 발급 가능함
-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지급 및 그 외의 세금납부와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

259)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0. Liability To Remit Tax - 10.1.4. Other systems (Last Reviewed: 15 March 2021.)

260) Bloomberg Tax, “Value-Added Tax Navigator - Europe, Poland, 10. Administrative Matters,”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C418?bc=W1siRG9jdW11bnQiLCIvcHJvZHVjdC90YXgvZG9jdW11bnQvWE5QU0M5MTgiXV0--a2054e82793e34a04ee73ce77c08783fc401698f&jcsearch=bn%2520vatn%2520pl%252010%25283%2529%25284%2529#section\(3\)\(3\)\(4\)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C418?bc=W1siRG9jdW11bnQiLCIvcHJvZHVjdC90YXgvZG9jdW11bnQvWE5QU0M5MTgiXV0--a2054e82793e34a04ee73ce77c08783fc401698f&jcsearch=bn%2520vatn%2520pl%252010%25283%2529%25284%2529#section(3)(3)(4)_0), 검색일자: 2021. 7. 6.

261) PKO Bank,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FOR VAT ACCOUNTS AND THE SPLIT PAYMENT MECHANISM FOR CORPORATE CLIENTS,” https://www.pkobp.pl/media_files/84547033-9cf6-4ee4-839d-fa6dd90e5694.pdf, 검색일자: 2021. 7. 12.

- (용도 1) 구분납부제도 대상 매입세액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함
 - 즉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여 일반 은행계좌로 송장상 공급가액을 지불할 수 없음
 - (용도 2)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시 총납부세액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함
 - (용도 3) 납세자의 그 외 세금 납부에 사용함
 - 납세자의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관련 이자 또는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기타 세금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음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있는 금액을 납세자의 일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과세관청은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과세관청은 과거 납세자가 세금을 연체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서 일반계좌로의 이체를 거부할 수 있음
- 라) 기타
- 폴란드는 구분납부제도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조기환급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1) 연대납부의무의 면제

- 폴란드는 민감 품목 재화의 매입자 및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매입대가를 지급하는 매입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⁶²⁾²⁶³⁾²⁶⁴⁾
- 「부가가치세법」 Annex 15에 열거된 민감 품목 재화의 매입자로서, 공급자가 매출

262) UPTiU Article 117ba.

263) Jan Starybrat Andrzej Debiec and Hogan Lovells, 2021.

264) PWC, "Worldwide Tax Summaries - Poland - Corporate - Other taxes," <https://taxsummaries.pwc.com/poland/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1. 7. 9.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한다면 매입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⁶⁵⁾

- 「부가가치세법」 Annex 15에 열거된 항목은 강제적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임
- 강제적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중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매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White List에서 확인되는 은행계좌 이외의 계좌로 매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송장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매입자에게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함
 -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의 현재 부가가치세 등록 현황(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유형, 은행계좌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White List를 전자적으로 유지하여야 함²⁶⁶⁾
 - 송장가액이 PLN1만 5천을 초과하는 매입대가를 White List에서 확인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관련 매입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함
 - 다만 매입자가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과세관청에 보고한 경우에는 연대납부 의무 및 비용불공제의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음

□ 그러나 매입자가 구분납부제도에 의해 관련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됨

- 즉 「부가가치세법」 Annex 15에 열거된 민감 품목 재화이나 강제적 구분납부제도 대상이 아닌 거래(예: PLN1만 5천 미만 거래)에 대해서 구분납부방식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됨²⁶⁷⁾
- 또한 White List에서 확인되지 않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구분납부방식에 의하는 경우 연대납부의무 및 비용불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65) UPTiU Article 105a.

266) UPTiU Article 96b.

267) MDDP, 2019, p. 13.

(2) 관련 가산세의 면제²⁶⁸⁾²⁶⁹⁾

- 구분납부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송장오류 및 부정확 보고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않음
 - 폴란드는 부가가치세액의 과소신고 또는 과다환급신고 및 송장 오류와 관련하여 과소신고세액 등의 20%, 30%, 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나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분납부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음²⁷⁰⁾²⁷¹⁾
 - 폴란드는 원칙적으로 국립은행의 기준금리에 2%p를 가산한 이자율의 200%에 상당하는 이자율(기준 연체이자율)에 의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되, 특정 조건 하에서는 기준 연체이자율을 경감(50%) 또는 할증(150%)하여 적용함²⁷²⁾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분납부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최소 95% 이상이 구분납부방식에 의해 지급되었을 것
 - 가산세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감면

- 납세자가 법정 납부기한 이전에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조기납부일수에 비례하여 납부세액을 감면함²⁷³⁾

268) UPTiU Article 108c. paragraph 1.

269) MDDP, 2019, p. 16.

270) UPTiU Article 108c. paragraph 2.

271) MDDP, 2019, p. 16.

272) IBFD - Poland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1.11.5. Late payment interest and penalties(Last Reviewed: 1 February 2021.)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이틀 전의 폴란드국립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4)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액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구분납부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25일 이내에 관련 세액을 환급함²⁷⁴⁾
 - 일반적으로 환급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구분납부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기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한편 조기환급은 납세자의 재무상황에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환급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액의 사용용도에 제약을 받는 단점도 있음²⁷⁵⁾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등의 납부에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자금운용에 제약을 받게 됨

6. 호주

가. 일반적 징수제도

- 호주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기반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로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음²⁷⁶⁾

273) UPTiU Article 108d.

274) UPTiU Article 87. Paragraph 6a.

275) MDDP, 2019, p. 16.

276) 최정희, 2019, pp. 12~13.

- 호주는 2000년 7월에 유럽형 부가가치세 모델을 따라 부가가치세(GST)를 도입함
 -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는 자임²⁷⁷⁾
 - 납세의무자인 공급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고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됨²⁷⁸⁾
- 총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임
 - 일반적으로 대금수수일과 송장수취일 중 빠른 날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봄²⁷⁹⁾
 - 공급자는 과세대상 사업과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①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의무가 있는 자로서 ②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된 재화 및 용역으로 ③ 관련 매입 송장을 발급받아야 함²⁸⁰⁾²⁸¹⁾
 -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송장 발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²⁸²⁾
 - 매입자가 기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액하여야 하며 추후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증액함²⁸³⁾

277) GST Act 1999(호주 「부가가치세법」) §23-10

278) 최정희, 2019, p. 83.

279) GST Act 1999 §20-5; 최정희, 2019, p. 106.

280) IBFD - Australia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9.1.1. Requirements for deduction(Last Reviewed: 31 January 2021.)

281) 최정희, 2019, p. 69.

282) GST Act 1999 §29-10; 최정희, 2019, p. 106.

283) GST Act 1999 §21-15; §21-20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납세의무자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²⁸⁴⁾
- 과세기간은 분기별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별, 연도별 신고납부를 적용함²⁸⁵⁾
 - 월별 신고납부: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 분기별 신고납부: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자로서 국세청으로부터 월별 신고납부 의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연도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점 미달자²⁸⁶⁾로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납세자가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목(예: 법인세)과 상계 후 잔여분을 환급함²⁸⁷⁾
 - 과세관청은 14일 이내 환급을 원칙으로 하나 환급액에 대한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유예할 수 있음²⁸⁸⁾²⁸⁹⁾

나. 매입자납부제도

1) 개요²⁹⁰⁾

- 호주는 금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귀금속

284)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 9.1.1. Requirements for deduction(Last Reviewed: 15 March 2021.)

285) 호주 국세청, "When and how to report and pay GST," <https://www.ato.gov.au/Business/GST/Lodging-your-BAS-or-annual-GST-return/Options-for-reporting-and-paying-GST/>, 검색일자: 2021. 7. 13.

286) 연간 매출액 7만 5천호주달러 이하, 비영리단체의 경우 15만호주달러 이하인 자를 말함

287) EY, 2021, p. 70; PWC, 2019, p. 21.

288) IBFD - Australia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 9.1.2. Excess input tax(Last Reviewed: 31 January 2021.)

289) 최정희, 2019, pp. 118~119.

290) 호주 국세청, "Reverse charge in the valuable metals industr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reverse-charge-in-the-valuable-metals-industry/>, 검색일자: 2021. 7. 16.

(valuable metal) 거래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일반적으로 금지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이지만 이를 가공한 물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임
 - 순도 99.5% 미만 금으로 구성된 재화, 투자형태가 아닌 골드바 등이 매입자납부 제도 적용대상 귀금속에 해당함²⁹¹⁾
- 부가가치세 사기행위가 금에서 다른 귀금속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 플래티늄 등을 포함한 귀금속을 대상으로 도입하였음

- 호주는 도입 초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2017년 1월부터 3월의 기간 동안 자발적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였음
 - 강제적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 이전에 3개월 동안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호주는 국내 사업자 간의 귀금속 거래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함²⁹²⁾
 - (요건 1) 호주 국내 공급
 - (요건 2)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의 과세사업목적의 공급일 것
 - B2C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요건 3) 금, 은, 플래티늄 등 귀금속의 공급

291) 호주 국세청, "Sales covered by a reverse charge,"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reverse-charge-in-the-valuable-metals-industry/?page=3#Sales_covered_by_a_reverse_charge, 검색일자: 2021. 7. 16.

292)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86.5;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6, pp. 10~11.

나) 적용대상

- 호주는 귀금속 거래에 한정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 금, 은, 플래티늄을 포함한 귀금속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함
 - 귀금속이 일부 포함된 경우도 해당됨(예: 금시계)²⁹³⁾
- 귀금속이 포함된 재화의 경우, 재화의 시가가 공급대상 재화에 포함된 귀금속 시가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귀금속에 한정하여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10%의 임계값 제도를 도입함²⁹⁴⁾²⁹⁵⁾
 - 예시 1) 공급대상인 금조각상의 시가가 540호주달러, 포함된 금의 시가가 500호주달러인 경우 금조각상의 시가는 원재료인 금 시가의 8%를 초과한 가치가 있으므로 금조각상은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임
 - 예시 2) 공급대상인 컴퓨터의 시가는 400호주달러, 컴퓨터에 내재된 서킷 회로판의 구성품인 금의 시가가 50호주달러인 경우 컴퓨터의 시가는 원재료인 금 시가의 700%를 초과한 가치가 있으므로 컴퓨터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의함
- 귀금속이 포함된 거래 중 강제적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²⁹⁶⁾
 -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10% 임계값 기준의 초과 여부와

293) 호주 국세청, "Sales covered by a reverse charge,"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reverse-charge-in-the-valuable-metals-industry/?page=3#Sales_covered_by_a_reverse_charge, 검색일자: 2021. 7. 16.

294)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6, p. 12.

295)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6, pp. 14~15.

296)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86.5;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6, p. 16.

무관하게 거래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량거래, 불확실성 등으로 임계값 기준 평가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고려하여 자발적 매입자납부제도도 허용하고 있음

다) 적용방법

(1) 공급하는 자

- ☐ 공급자는 귀금속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 하여야 함²⁹⁷⁾
- ☐ 공급자는 귀금속의 공급 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송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 하고, 해당 거래가 매입자납부제도 적용임을 송장에 명시하여야 함²⁹⁸⁾
 - 송장에는 공급자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신원정보, 송장 날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재화에 대한 설명란에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임을 명시 하여야 함

(2) 공급받는 자²⁹⁹⁾

- ☐ 매입자는 귀금속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297) 호주 국세청, “Reverse charge in the valuable metals industr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reverse-charge-in-the-valuable-metals-industry/?page=1#Whatthereversechargemeans>, 검색일자: 2021. 7. 16.

298) 호주 국세청, “Record keeping requirement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reverse-charge-in-the-valuable-metals-industry/?page=6#Record_keeping_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7. 16.

299) 호주 국세청, “Reverse charge in the valuable metals industr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reverse-charge-in-the-valuable-metals-industry/?page=1#Whatthereversechargemeans>, 검색일자: 2021. 7. 16.

- 매입자는 공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관련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함
- 매입자는 귀금속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고의무도 있음
- 매입자는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따라서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세액이 완전공제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다. 구분납부제도

1) 개요

- 호주는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신규 거주용 부동산(new residential premises) 및 잠재적 거주용 부지(potential residential land)를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함³⁰⁰⁾
 -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도래 전에 파산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 하는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 국세청은 2017년 11월 기준 과거 5년간 이와 같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3,731명의 개인을 확인함
 - 이들은 18억호주달러의 조세채무를 미납부하여 결손 처분된 부실기업 1만 2천개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들 부실기업은 2013년에서 2017년 중 매입세액공제로 12억호주달러를 청구하였음
 - 호주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개발업계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노동집약적이고 수행 및 유지에 비용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300)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 47.

- 국세청은 납세자교육, 체납징수체계 개선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큰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함³⁰¹⁾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신규 거주용 부동산 및 잠재적 거주용 부지의 매매에 대해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함³⁰²⁾
 - 호주 정부는 거래 후 최장 3개월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점이 부가가치세 조세회피에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함
 - 거주용 부동산 개발분야는 다른 상업시설 개발과 비교하여 볼 때 거래 규모가 현저히 크며,³⁰³⁾ 관련 조세회피도 집중되어 있으므로 거주용 부동산 개발분야에 한정하여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상업분야로의 확대는 추후 고려하기로 함
- 호주의 구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액'의 원천징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는 납세자에게 익숙한 원천징수제도의 활용을 통해 납세자에게 쉽게 이해되고 적용될 것으로 기대함³⁰⁴⁾
 - 호주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세부내용

가) 적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³⁰⁵⁾
 - (요건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일 것
 - (요건 2) 특정 신규 거주용 부동산 및 잠재적 거주용 부지의 공급일 것

301)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 72.

302)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 73.

303) 호주 정부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분야는 주택 개발분야의 1/12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음

304)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 77.

305)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 SCHEDULE 1 Section 14~250.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의무는 B2C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 원천징수의무는 매입자에게 부여되며, 이에는 최종소비자 등 매입세액공제권이 없는 자도 포함됨³⁰⁶⁾
- 호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함³⁰⁷⁾
- 부동산 거래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을 사용하므로 매입자의 실제 납세협력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³⁰⁸⁾ 다수의 소규모 납세자에게 혼동 및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비판하는 견해도 있음³⁰⁹⁾

나) 적용대상³¹⁰⁾

□ 호주는 신규 거주용 부동산 및 잠재적 거주용 부지의 공급에 한정하여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신규 거주용 부동산이란 기존에 거주용 부동산으로 판매된 적이 없는 부동산, 대대적 리노베이션을 통해 완성된 것, 동일 부지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부동산 등을 의미함³¹¹⁾
 - 집(house)과 땅, 분양권(off-the-plan³¹²⁾), 모델하우스(display home), 신축

306) Michael B Evans, 2020, p. 67.

307) 호주 국세청, "GST at settlement - a guide for purchas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a-guide-for-purchasers-and-their-representatives/>, 검색일자: 2021. 7. 19.

308)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 78.

309) Denis McCarthy, 2020, p. 186.

310) 호주 국세청, "Properties that are included and excluded,"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4#Properties_that_are_included_and_excluded, 검색일자: 2021. 7. 19.

311) 호주 국세청, "Terms we use,"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anchor=Newresidentialpremises2#Potentialresidentialland>, 검색일자: 2021. 7. 19.

312) off-the-plan이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집 등을 구매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분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됨(호주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기관, "Buying off-the-plan," <https://www.consumer.vic.gov.au/housing/buying-and-selling-property/buying-property/buying-off-the-plan>, 검색일자: 2021. 7. 19.)

아파트 등이 해당됨

- 참고로 호주는 신규 거주용 부동산 이외의 기존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³¹³⁾
- 잠재적 거주용 부지란 신규 거주용 건물의 건축에 사용될 수 있는 땅을 말함³¹⁴⁾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가 신용할 수 있는 목적³¹⁵⁾을 위하여 잠재적 거주용 부지를 매입하는 B2B 거래에 대해서는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³¹⁶⁾³¹⁷⁾
- 매입자가 쟁점 거주용 부동산 등을 매매 또는 장기리스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구분납부 제도가 적용됨³¹⁸⁾
 - 장기리스방식이란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이 5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³¹⁹⁾

다) 적용방법

- 매입자는 정산일(settlement day)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³²⁰⁾
 - 정산일이란 표준토지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결제일, 할부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첫 번째 할부금액이 지불되는 날을 말함

313) 호주 국세청, "Existing residential propert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nd-residential-property/?anchor=Sellinganexistingresidentialproperty#Sellinganexistingresidentialproperty>, 검색일자: 2021. 7. 19.

314) 호주 국세청, "Terms we use,"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anchor=Newresidentialpremises2#Potentialresidentialland>, 검색일자: 2021. 7. 19.

315) 토지개발, 신규 거주용 건물의 건축 및 판매와 같은 경우가 해당됨

316)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edule 1, §14-250(1)

317)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 50.

318)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edule 1, §14-250(2)

319) 호주 국세청, "Terms we use,"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14#Long_term_leases, 검색일자: 2021. 8. 10.

320) 호주 국세청, "Supplier notification,"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a-guide-for-suppliers-and-their-representatives/?page=3#Supplier_notification, 검색일자: 2021. 7. 19.

- 원천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이란 일반적으로 계약가격의 1/11임
 - 호주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의 단일세율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함

(1) 공급하는 자³²¹⁾

- 공급자는 구분납부적용대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관련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공급자는 ‘정산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관련 공급을 포함하여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별도로 신고서에 기재함
-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거래가 원천징수대상인 것과 원천징수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³²²⁾³²³⁾
 - 관련 사항은 매매계약서 또는 정산 이전에 별도의 문서를 통해 통지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주 정부)는 관련 정보가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음
 - 문서에는 공급자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 지점번호, 원천징수금액, 매입자가 과세관청에 지불해야 하는 시기,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가격을 포함해야 함
 - 매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100점의 가산세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321) 호주 국세청, “GST at settlement proces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5#GST_at_settlement_process, 검색일자: 2021. 7. 19.

322) 호주 국세청, “If you are selling propert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2#If_you_are_selling_property, 검색일자: 2021. 7. 19.

323) 호주 국세청, “Compliance and penaltie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10#Compliance_and_penalties, 검색일자: 2021. 7. 19.

- 2021년 현재 벌점 1점은 222호주달러임³²⁴⁾
- 다만 정직하고 합리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2) 공급받는 자³²⁵⁾³²⁶⁾

-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매입자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기한 이전까지 서식 1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매입자는 계약 체결 이후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기한 이전까지 ‘서식 1. 부가가치세 재산 정산 원천징수통지서(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를 과세관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서식에는 공급자의 통지내용, 예상 정산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서식이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지불번호(Payment Reference Number, PRN)와 신고 번호(Lodgment Reference Number, LRN)가 제공됨
 - 지불번호란 납세자의 세금이 올바른 계정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고유 식별번호임³²⁷⁾
- 이후 매입자는 서식 2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산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함
 - 매입자는 ‘서식 2. 부가가치세 재산 정산일 확인서(GST property settlement date

324) 호주 국세청, “Penalties,” <https://www.ato.gov.au/General/Interest-and-penalties/Penalties/>, 검색일자: 2021. 7. 19.

325) 호주 국세청, “If you are purchasing propert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3#If_you_are_purchasing_property, 검색일자: 2021. 7. 19.

326) 호주 국세청, “GST at settlement proces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5#GST_at_settlement_process, 검색일자: 2021. 7. 19.

327) 호주 국세청, “How to pay your BAS,” [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activity-statements-\(bas\)/how-to-pay-your-bas/#:~:text=A%20payment%20reference%20number%20\(PRN\)%20is%20your%20unique%20identifier%20that,income%20tax%20and%20activity%20statement.,](https://www.ato.gov.au/business/business-activity-statements-(bas)/how-to-pay-your-bas/#:~:text=A%20payment%20reference%20number%20(PRN)%20is%20your%20unique%20identifier%20that,income%20tax%20and%20activity%20statement.,) 검색일자: 2021. 7. 19.

confirmation)’를 작성하여 정산 전 2영업일 이내, 정산일 당일 또는 정산 후 익영업일에 제출함

- 할부계약인 경우 정산일 대신 최초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매입자는 서식 2를 제출할 때 서식 1의 제출 시 부여받은 지불번호와 신고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 매입자는 표준토지계약은 정산일에,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최초 할부금 지급일에 원천징수대상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매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서식 1의 제출 시 부여받은 지불번호를 명시하여야 함
 - 매입자는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금융기관을 통한 전자적 송금, 우편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³²⁸⁾
- 참고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면 과세관청은 공급자에게 ‘향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을 알려주는 이메일을 송부함

□ 매입자가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³²⁹⁾

- 매입자가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28일 기간당 1점의 가산세(단 5점을 한도로 함)가 부과될 수 있음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부가가치세액’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됨
 - 다만 구분납부와 관련하여 공급자의 통지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과세관청을 수령인으로 하는 원천징수금액을 기표한 은행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328) 호주 국세청, “How to pay the withholding amount,”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property-settlement-online-forms-and-instructions/?page=5>, 검색일자: 2021. 7. 19.

329) 호주 국세청, “Compliance and penaltie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property/gst-at-settlement/?page=10#Compliance_and_penalties, 검색일자: 2021. 7. 19.

V. 국제비교 및 소결

1. 국제비교

가.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개요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모두 일반적 부가가치세 징수제도와는 별도로 국내거래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폴란드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9년 강제적 구분납부제도 도입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대체하였음
 - 이탈리아, 호주는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모두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는 강행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폴란드는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지만,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징수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로 구분납부제도를 강행규정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임의규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현재도 납세자는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등에 대해서 징수특례제도 이용을 선택할 수 있음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 이탈리아 및 호주를 제외한 국가들은 과세 사업자 간의 거래 (B2B)에 대해서만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는 B2B 거래에 대해서만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함
 - 이탈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는 B2B 거래에 대해 적용하지만, 구분납부제도는 과세 사업자의 정부기관에 대한 공급거래(B2G), 과세 사업자의 상장기업에 대한 공급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구분납부제도의 경우 당초 B2G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지만 이후 B2B(단 매입자가 상장기업일 것)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와 호주는 B2B, B2C 거래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B2C 거래 중 유흥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징수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호주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B2B, B2C 거래를 포괄함
-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국은 징수특례제도를 사기에 취약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을 특정하고 있으나, 구분납부제도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이 아닌 적용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음
 - 그 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모두 사기에 취약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V-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 개요

구분	우리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징수특례 제도	구분납부	매입자 납부	매입자 납부	매입자 납부	매입자납부& 구분납부	구분납부	매입자납부& 구분납부
강행규정	○	○	○	○	○	△	○
적용대상자	B2B, B2C	B2B	B2B	B2B	• 매입자납부: B2B • 구분납부: B2G, 특정 B2B	B2B	매입자납부: B2B 구분납부: B2B, B2C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법에 열거	법에 열거	법에 열거	법에 열거	• 매입자납부: 법에 열거 • 구분납부: 모든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	법에 열거	법에 열거

주: B2B는 사업자 간의 거래를, B2G는 사업자와 정부기관과의 거래를, B2C는 사업자와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를 의미함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나. 매입자납부제도

- 매입자납부제도는 상당수의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음
 - 주요국 중 EU 회원국인 영국,³³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폴란드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다 2019년 이를 구분납부제도로 대체하였음
 - 호주는 상대적으로 뒤늦은 2017년부터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호주는 귀금속 분야에 한정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30) 영국은 2021년부터 EU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EU 회원국일 때 도입한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교목적상 본 보고서에서 EU 회원국을 지칭하는 때에 영국도 포함함(이하 동일)

- 주요국 중 독일이 가장 광범위하게 매입자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EU 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분야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휴대폰 등 이동이 용이한 재화에서 탄소배출권, 전기 및 가스, 통신용역, 건설용역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 회원국에 비해 호주의 부가가치세 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은 매입자납부제도를 비롯한 징수특례제도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기준 과거 6년간 호주의 부가가치세 갭은 7.3~8.2% 수준으로 호주 국세청은 동일 기간 다른 EU 회원국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³³¹⁾
- 주요국 중 영국과 독일은 특정 재화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최저기준 금액을 두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는 별도의 기준금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영국은 휴대폰 및 컴퓨터칩, 독일은 휴대폰 및 컴퓨터칩, PC·게임콘솔·귀금속 등에 대해서 각각 송장별 5천파운드 및 5천유로라는 최저기준금액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는 기준금액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매입자납부제도는 일반적 징수제도하에서 납부의무자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신고 및 납부방법에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자납부제도 이용자에 대한 특혜사항 또한 확인되지 않음
- 매입자납부제도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되, 공급자가 발부하는 송장에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는 특이사항을 보임
 - 단 영국은 휴대폰 및 컴퓨터칩과 관련해서는 거래개시 전 국세청에 통보의무 및 거래 중 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두고 있음
 - 주요국은 매입자납부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331) 호주 국세청, "Trends and latest findings,"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Tax-gap/Goods-and-services-tax-gap/?page=2>, 검색일자: 2021. 8. 12.

- 이는 매입자납부제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까지 매출세액의 활용기회는 상실하지만 매입세액의 활용기회가 발생하여 구분납부제도에 비해 납세자의 현금 흐름상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됨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에 특정된 별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 프랑스는 매입자가 매입자납부세액을 미신고하는 경우 납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이탈리아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미적용 및 오적용한 경우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함
 - 그 외의 국가에서는 매입자납부제도에 특정된 별칙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별칙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입자납부제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별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영국은 매입자납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에게 사기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매입자납부제도에 특정된 별칙규정은 아님³³²⁾

〈표 V-2〉 주요국의 매입자납부제도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적용대상자	B2B	B2B	B2B	B2B	B2B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 휴대폰 및 컴퓨터칩 (5천파운드 이상) • 탄소배출권 • 가스 및 전기 • 통신용역 • 재생가능에너지인증서	• 부동산 및 담보로 제공되는 재화 • 건축, 수리, 유지, 철거, 건물청소 관련 재화 및 용역 • 냉난방 공급	• 산업폐기물 등 • 전자통신 서비스 관련 • 탄소배출권 • 원산지보증서 • 가스 및 전기	• 휴대폰 등 • PC, 태블릿 등 • 철 스크랩 등 • 비철금속 스크랩 등	• 귀금속

332) 영국은 부가가치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휴대폰, 컴퓨터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자가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또는 전·후단계의 세액이 국세청에 납부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것으로 분류되면, 매입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 참고로 연대납부 적용대상 재화와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가 일치하지는 않음(HMRC, VAT Notice 726. Section 1. & Section 2.)

〈표 V-2〉의 계속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 건설용역	• 특정 재생원료 • 철 및 비철 금속폐기물 • 플라스틱, 고무, 전지 등 폐기물 • 휴대폰 및 컴퓨터칩 (5천유로 이상) • PC, 게임콘솔, 귀금속 (5천유로 이상) • 탄소배출권 • 가스 및 전기 • 통신용역	• 건설용역	• 건물청소, 철거, 유지, 보수 관련 용역 • 탄소배출권 • 가스 및 전기 • 산업용 금 • 건물 • 건설용역	
신고 및 납부방법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적용 • 송장에 매입자납부 명시 • 단 휴대폰 및 컴퓨터 칩의 경우 공급자의 거래개시통보 및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적용 • 송장에 매입자납부 명시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적용 • 송장에 매입자 납부 명시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적용 • 송장에 매입자 납부 명시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적용 • 송장에 매입자납부 명시
특혜사항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미이행 시 제재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미적용(오적용 포함) 시 가산세 부과	확인되지 않음

자료: 본문 제Ⅵ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구분납부제도

1) 개요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과 원천징수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만, 호주는 원천징수방식만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제품, 스크랩 등은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에 의하고 있으나, 유흥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원천징수방식에 의하고 있음
 -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에 의한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호주는 매입자가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방식에 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모두 B2B를 중심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호주는 B2C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용계좌방식의 경우 B2B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원천징수방식은 유흥업종의 B2C를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B2C 거래는 채납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유흥업종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최종소비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지급결제업체를 통한 원천징수 방식에 의하고 있음
 - 호주는 주택 등의 매매 거래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방식에 의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인 주택 등의 특성상 B2C 거래가 다수일 것이나 기타 재화 및 용역에 비하여 거래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탈리아는 B2G와 상장기업이라는 한정된 범위의 B2B 거래에 대해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당초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만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다 상장기업에

공급하는 거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함

- 폴란드는 B2B 거래를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우리나라, 폴란드, 호주는 사기 및 탈루에 취약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적용대상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및 유흥업종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폴란드는 철, 귀금속 등 150여 개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구분납부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과거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던 품목 등에 대하여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호주는 신규 주택 및 잠재적 주택부지에 대해서만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이탈리아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음
- 폴란드는 구분납부제도 적용 최저기준금액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는 적용 기준금액을 두고 있지 않음

〈표 V-3〉 주요국의 구분납부제도-개요

구분	우리나라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적용방식	VAT 전용계좌방식과 원천징수방식 병행	VAT 전용계좌방식	VAT 전용계좌방식	원천징수방식
적용대상자	• 전용계좌: B2B • 원천징수: B2C	B2G B2B(상장기업)	B2B	모든 거래자 (B2B, B2C)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 금 관련 제품 • 스크랩 등 • 유흥업종에 대한 신용카드거래	• 모든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 철, 귀금속 등 • 전자장치 • 폐기물 • 석유, 석탄 • 건설용역 • 탄소배출권 등	• 신규 주택 • 잠재적 주택부지
적용 기준금액	-	-	송장별 PLN1만 5천 이상	-

주: 우리나라는 금 관련 제품 등 B2B에 대해서는 VAT 전용계좌방식을, 유흥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등 B2C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활용한 원천징수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폴란드는 송장별 PLN1만 5천 이상인 거래를 대상으로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함
- 반면 우리나라, 이탈리아, 호주는 적용 기준금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납부 및 정산

- 우리나라, 이탈리아,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상시 전용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지만, 호주는 국세청이 건별로 전용계좌번호를 교부함
 - 우리나라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별로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함
 - 재화별 전용계좌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탈리아 및 폴란드는 사업자별로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함
 - 호주는 매 거래건별로 국세청이 임시계좌번호를 교부함
 - 다른 주요국과는 달리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므로 상시전용계좌가 아닌 개별 건별 계좌번호 발부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됨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용계좌방식을 채택한 이탈리아, 폴란드는 금융기관 전자이체를 통해서만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반면,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한 호주는 신용카드, 전자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원천징수방식(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중개인인 '신용카드사'를 대리 납부자로 하는 방식에 의함
- 주요국 중 우리나라(원천징수방식)는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그 외의 국가는 모두 부가가치세액 전체를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용계좌방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100%를 구분납부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구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액의 일부(공급대가의 4/110)를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함
 -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는 부가가치세액의 100%를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납세자가 공급대가를 이체하면 금융기관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나, 이탈리아와 호주는 납세자가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납세자가 공급대가를 송금하면, 금융기관이 이 중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계좌로 이체함
 - 반면 이탈리아와 호주는 납세자가 공급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송금하여야 함
 - 즉 이탈리아와 호주의 경우 납세자는 최소 2회의 송금절차를 거쳐야 함

- 우리나라(전용계좌 방식)와 폴란드는 매입자가 공급대가 전액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반면, 이탈리아와 호주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납부함
 -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공급대가 전액을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다만 반드시 부가가치세액 송금일에 공급가액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와 호주는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로 이체함
 - 이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액과 공급대가를 직접 구분 송금하는 점과도 연계된 것으로 보임

- 전용계좌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폴란드는 신고기한 내에서 발생 건별 또는 일정 기간의 거래내용을 합산하여 구분납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전용계좌방식)는 공급일(세금계산서 수취일이 더 늦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일)의 익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세금계산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매입자가 월합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별 1역월 이내의 세액을 합산하여 구분납부할 수 있음³³³⁾
 - 이탈리아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매월 중 발생한 세액을 일괄하여 납부하거나 매 발생건별로 납부할 수 있음

333) 부가, 서면-2016-부가-5195, 2017. 3. 27.

- 폴란드는 대금지급일에 거래 건별로 세액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1일에서 1달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전용계좌방식)는 후속 매출 발생 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여 주지만, 이탈리아, 폴란드 및 호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부가가치세액을 정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후속 매출 발생 시 입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하여 주며, 환급 후 잔액은 분기말 익월 25일까지 국고에 수납하도록 규정하였음
 - 우리나라는 품목별 구분된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있어 후속 매출 발생에 따른 실시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이탈리아, 폴란드 및 호주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의 실시간 환급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원천징수방식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전의 실시간 환급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후 전용계좌에 있는 자금의 사용용도를 부가가치세액·그 외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폴란드는 신고기한 종료 후 전용계좌에 있는 자금은 부가가치세액 납부, 그 외의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전용계좌로 송금됨
 - 전용계좌에 있는 자금을 납세자의 일반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연체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이체가 거부될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전용계좌의 사용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표 V-4〉 주요국의 구분납부제도-납부 및 정산

구분	우리나라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전용계좌	금융기관에서 재화 유형별 개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별 개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별 개설	호주 국세청이 건별로 계좌 교부
세액 납부방법	- 전용계좌: 금융기관 계좌이체 - 원천징수: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금융기관 계좌이체	제한 없음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입금액	- 전용계좌: 공급대가 - 원천징수: VAT 일부 (공급대가의 4/110)	VAT	공급대가	VAT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금융기관이 구분	매입자가 구분	금융기관이 구분	매입자가 구분
세액납부일	- 전용계좌: 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수취일 중 늦은 날의 익일 - 원천징수: 분기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단 매 발생건별로 납부 가능)	대금지급일 (단 1일~1개월 이내 기간을 대상으로 합산납부 가능)	계약상 대금지급일(할부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액 지불일)
정산일	- 전용계좌: 후속 매출 발생시 또는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 원천징수: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산 후 잔액의 용도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VAT 및 기타 세금납부	-

주: 1. 우리나라의 전용계좌방식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액만 납부할 수 있음
 2. 우리나라는 거래처별로 1개월 이내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일(공급일이 더 빠른 경우)의 익일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원천징수방식에서 대리납부의무자(신용카드사)는 공급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지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추후 분기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이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함
 4.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매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자료: 본문 제Ⅵ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3) 기타

- 우리나라(전용계좌방식)는 구분납부제도를 미사용하는 경우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나,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는 매입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함
 - 우리나라는 구분납부제도를 미사용하는 경우 공급자와 매입자에게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불공제와 지연입금가산세 부과 추가 제재를 가함
 - 이탈리아는 구분납부제도의 미사용 시 매입자에게 미납부세액 또는 지연납부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공급자는 2018년부터 송장에 구분납부방식임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된 가산세 등의 제재도 없음
 - 폴란드는 구분납부방식 미사용 시 매입자에게 가산세(부가가치세액의 30%)를 부과하고 법인·소득세법상 관련 비용을 불공제함
 - 공급자의 경우에는 송장에 구분납부방식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호주는 매입자가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공급자의 경우에는 매입자에게 구분납부대상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한편 우리나라, 이탈리아 및 폴란드는 구분납부제도의 이용자에 대해 조기 및 실시간 환급,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용계좌방식의 경우 실시간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법인세 등의 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원천징수방식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
 - (전용계좌방식)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자에게 후속 매출 발생 시 실시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며 매입자 및 공급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함

- (원천징수방식) 공급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이탈리아는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구분납부제도에 한하여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혜택을 부여함
 - 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이 아닌 이월공제함
- 폴란드는 매입자에게 연대납부의무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며, 구분납부제도 이용자들에게는 법정 납부기한 전 조기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세액감면, 가산세의 면제 및 조기환급의 혜택을 부여함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일(60일)에 비하여 단축된 기간(25일) 내에 세액을 환급함
-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구분납부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사업자의 자금 흐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등을 위해 조기·실시간 환급 및 세액감면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V-5〉 주요국의 구분납부제도-기타

구분	우리나라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미이행 시 제재	• 미사용가산세 (공급자&매입자) • 매입세액불공제 • 지연입금가산세	• 미사용 및 지연 입금가산세 (매입자)	• 미기표가산세(공급자) • 미사용가산세(매입자) • 소득세(법인세) 목적 비용 불공제	• 미통지가산세 (공급자) • 미사용가산세 (매입자) • 서류미제출가산세 (매입자)
혜택	• 전용계좌: 실시간환급,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원천징수: VAT 납부세액의 감면	조기환급	• 조기환급 • 연대납부의무 면제 • 납부세액의 감면 • 가산세 면제	확인되지 않음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소결

- 현재 우리나라는 제한된 영역을 대상으로 구분납부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국과 유사하게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제도의 복잡한 면이 있으나 이는 구분납부제도의 특성으로 이해됨
 - 우리나라와 같은 구분납부제도를 채택한 국가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구분납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구분납부방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납세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후속 매출에 따른 실시간 환급, 소득·법인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액의 감면, 실효세율을 반영한 부분원천징수제도(B2C 거래)를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통한 합산 납부,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B2C 거래)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의 확대여부는 사회적 공감대 및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경제적 분석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됨
 - 부가가치세 탈루율이 높은 업종, 제도 도입 시의 비용-편익결과는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 및 효익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 징수특례는 사기방지를 위해 도입되지만 이를 위해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 및 최종소비자에게 새로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³³⁴⁾
 - 참고로 조사대상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주로 사기에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를

334) Denis McCarthy, 2020, p. 186.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³³⁵⁾

- 조사대상국은 매입자납부제도 및 구분납부제도 모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특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만약 우리나라의 징수특례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시함

□ 첫째,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 중 구분납부제도가 세수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납세협력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보임

- 매입자납부제도와 구분납부제도 모두 부가가치세 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매입자납부제도와 달리 구분납부제도는 거래의 각 단계마다 과세관청에 매출세액이 조기에 납부되는 장점이 있음

- 구분납부제도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약화된 상호검증기능 및 단 한번의 사기만으로도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 다만 매입자납부제도에 비해 구분납부제도는 운영방식이 복잡하고 납세자의 자금 부담이 크며 이를 반영한 제재규정과 혜택규정이 있음

- EU는 전통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선호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탈리아 등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발생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기존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구분납부제도를 추가 시행함

- 폴란드는 매입자납부제도를 구분납부제도로 전환하였음

- 구분납부제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갭이 높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에콰도르는 높은 부가가치세 탈루율하에서 구분납부방식에 의한 징수특례제도를 도입함

335) EC는 2018년에 회원국이 전면적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원국 중 전면적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음

-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2014~2018년 기준 부가가치세 갭은 EU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구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근래 운영하였던 이탈리아, 체코 및 루마니아는 일반적으로 EU 평균치를 상회함³³⁶⁾
- 한편 폴란드의 2014, 2015년 부가가치세 갭은 EU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8년, 2019년은 EU 평균치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2019년에 매입자납부제도에서 구분납부제도로 전환하였음

□ 둘째,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 거래를 고려한 최소 적용기준금액은 제도의 복잡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폴란드는 송장별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기준금액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준금액이 또 다른 유형의 부가가치세 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불가리아는 구분납부제도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두었으나 기준금액 이하의 거래를 이용한 신종 부가가치세 사기가 발생한 것이 확인됨
- 호주는 구분납부제도 도입 당시 기준금액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나 제도의 복잡성,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유인 가능성,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도입하지 않음³³⁷⁾

336)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EU 회원국 중 구분납부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VAT Gap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예측)
도입국	이탈리아	29.9	28.2	27.3	24.7	24.5	23.9
	폴란드	24.4	24.7	20.4	14.3	9.9	9.7
비도입국	영국	10.9	9.9	10.6	11.9	12.2	10.0
	독일	11.7	9.0	8.8	8.8	8.6	7.7
	프랑스	10.3	9.5	8.4	6.8	7.1	3.9
EU 회원국 평균		14.3	13.0	12.1	11.5	11.0	9.6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0, p. 17; p. 26; p. 32; p. 34; p. 44; p. 51.

337)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7, pp. 74~77.

- Deloitte는 기준금액 규정은 구분납부제도로 야기되는 자금흐름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사기방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제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³³⁸⁾
- 셋째, 구분납부제도 중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은 B2B 거래에 적합하며 간이과세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부가가치세 전용계좌방식은 매입자의 계좌유지 및 납부행위가 필요하므로 사업자에 비하여 세무행정여건이 미미한 최종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권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대리납부유인이 없으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하던 사업자 까지 무자료거래를 하게끔 하는 단점이 있음³³⁹⁾
 - 일반적으로 구분납부제도하에서 과세매입자는 자신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대리납부할 필요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권이 없으므로 대리납부유인이 없음
 - 전용계좌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는 복잡한 전용계좌방식에 적응하기보다는 무자료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이를 이용한 신종 부가가치세 사기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넷째, 구분납부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구분납부하는 방식은 제도를 단순하게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분 구분납부는 거래당사자의 현금흐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³⁴⁰⁾

338) Deloitte, 2017, p. iv.

339) 김재진·홍성열·이형민, 2015, pp. 73~74.

340) Deloitte, 2017, p. iv.

- 사기에 취약한 분야별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제도가 복잡해지고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EU 회원국 중 구분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부가가치세액의 100%를 원천징수하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상당수의 국가에서 부분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³⁴¹⁾
- 현재 우리나라는 전용계좌방식(금제품, 스크랩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의 100%를, 신용카드 대리납부방식(유흥업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구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의 10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각 업종별 실효세율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일면 합리적일 수 있으나, 구분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이 많아지는 경우 납세자의 혼동을 야기하여 단순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전용계좌방식 구분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품목별 계좌가 아닌 사업자별 전용계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금제품과 스크랩 등의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발급·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인적오류의 발생가능성, 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대상 사업자별 전용계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분납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넓은 이탈리아와 폴란드 모두 사업자별 전용계좌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사업자별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후속 매출 발생에 따른 실시간 환급제도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바 납세자의 현금흐름상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341) 베네수엘라는 부가가치세액의 75%, 100%를, 에콰도르는 30%, 70%, 100%를 원천징수하며 엘살바도르는 공급가액의 1%를 원천징수함(Deloitte, 2017, p. 26)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기간 조기환급³⁴²⁾ 또는 전용계좌 활용범위의 확대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³⁴³⁾
- 이에 더하여 폴란드와 같이 신고기한 이전 납부된 세액에 대한 이자보상성격의 세액감면 도입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³⁴⁴⁾

342) 분기별 환급이 아닌 월별 환급방안, 환급신청 후 환급세액의 지급기한의 단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43) 구분납부제도하에서 매출세액은 조기에 납부되지만 매입세액의 공제시기에는 변동이 없어 사업자에게 자금흐름상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도입이 요구됨.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조기환급(예: 폴란드, 이탈리아),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의 활용범위를 매출세액 납부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및 그 외의 세목의 납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예: 폴란드), 부가가치세액의 100%가 아닌 일부만을 원천징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344)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매월 단위로 신고·납부함. 우리나라는 분기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세액공제 부여혜택 이외 신고기한 이전 납부세액에 대한 이자보상적 지원방안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문헌

- 국세청,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매뉴얼』, 2016.
- _____, 『월간 국세』 2019년 1월호, 2019.
- _____,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
-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2021.
-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 김재진·홍성열·이형민,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15.
- 기은선·구자은·박명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5.
- 박정수,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영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박창덕·박미희·김병일, 『실시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2018.
- 성명재·박명호·이성식·박종수, 『증장기 부가가치세제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정지선·윤성만,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6.
- 최정희,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 부가가치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Agenziaentrate, IVA - *Chiarimenti sulla disciplina del Gruppo IVA contenuta nel Titolo V-bis del D.P.R. 26 ottobre 1972*, n. 633 e nel D.M. 6 aprile 2018 del Minist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2018.
- Aneta Nowak-Piechota, "Mechanizm podzielonej płatności-ocena nowej regulacji," *Kwartalnik Prawa Podatkowego* Nr 2/2018, 2018.
- Denis McCarthy, "Twenty years later: Australia's GST design, digitisation and

- disruption - old and new challenges,” *eJournal of Tax Research*, 18(1), School of Taxation and Business Law (Atax),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0.
- EC, COM 10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Measures to Change the VAT System to Fight Fraud*, 2008.
- Ekaterina Tarhova, “VAT split payment- a tricky matter of aiming at the best design and combination,” *Financial Law Review*, University of Gdańsk, 21(1), 2021,
- European Commission,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2014.
- _____, *Study and Reports on the VAT Gap in the EU-28 Member States*, 2020.
-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21*, 2021.
- Hana Zídková, Aneta Šťastná, “VAT Collection methods,” *ACTA Universitatis Agriculturae et silviculturae mendelianae brunensis*, Volume 67, 2019.
-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for an Annual Tax Act 2020*, 2020.
- Jan Sarnowski and Paweł Selera, *Reducing the VAT Gap - Polish Experience and Legislative Measures Introduced in Years 2016-2018*, International VAT Monitor May/June 2019.
- Jan Strybrat Andrzej Debiec and Hogan Lovells, *Value-Added Tax Navigator - Europe- Poland, 9. Extension or Shifting of VAT Liability*, Bloomberg TAX. 2021. 5.
- Madeleine Merks and Naomie Verbaan, “Technology: A key to solve VAT Fraud?,” *ec tax review 2019-6*,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9.
- MDDP, *SPLIT PAYMENT- 20 things that you have to know*, 2019.
- Michael B Evans, “GST: where to next?,” *eJournal of Tax Research*, 18(1), School of Taxation and Business Law (Atax),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0.

- Michael Keen and Stephen Smith, *VAT Fraud and evasion*, IMF working paper, WP/07/31, 2007.
-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réforme de l'état, *BULLETIN OFFICIEL DES IMPÔTS-3 A-4-12*, N° 48, 2012.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20*, 2020.
- Parliament on Measures to Change the VAT System to Fight Fraud. 2008.
- Pashew, Konstantin, *Fighting VAT Fraud: The Bulgarian experience*, MPRA Paper No. 998,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cy, 2006.
- PWC,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lternative methods for improving and simplifying the collection of VAT through the means of modern technologies and/or financial intermediaries*, 2010.
- _____, *A guide to VAT/GST in Asia Pacific 2019*, 2019.
- REPUBLIC OF POLAND, *CONVERGENCE PROGRAMME 2019 UPDATE*, 2019.
- Richard T. Ainsworth, *VAT Fraud as a policy stimulus - Is the US watching? VAT withholding, RTvat and the mittler Model*.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11-08, 2011.
- Richard Thompson Ainsworth and Boryana Madzharova, *Real-time collection of the Value-added tax: Some business and legal implications*,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12-51,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2.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House of representatives, *Treasury laws amendment(GST INTEGRITY) bill 2017 explanatory memorandum*, 2016,
-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reasury laws amendment (2018 MEASURES No. 1) bill 2017 explanatory memorandum, 2017.

국세청,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이탈리아 기획재정부, <https://www.agenziaentrate.gov.it>

이탈리아 재무부, <https://www1.finanze.gov.it>

프랑스 국세청 법령사이트, <https://bofip.impots.gouv.fr>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빅토리아주 소비자보호기관, <https://www.consumer.vic.gov.au/>

Avalara, <https://www.avalara.com/>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

BNP PARIBAS, <https://www.bnpparibas.pl/>

Deloitte, <https://www.taxathand.com>

European Committee, <https://eur-lex.europa.eu>

IBFD, <https://research.ibfd.org/>

KPMG, <https://home.kpmg/>

PKO Bank, <https://www.pkobp.pl/>

PWC, <https://www.pwc.pl>

TPA Poland, <https://www.tpa-group.p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

세법연구 21-04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제도 비교연구
-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

발 행 2021년 9월 30일
저 자 정다운 · 홍성희 · 강문정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디자인 디자인법신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79-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